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전공

신 영 미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진 미 정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가족학전공
신 영 미

신영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Grace H. Chung (인)

부위원장 이 재 림 (인)

위 원 김 경 민 (인)

위 원 손 서 희 (인)

위 원 진 미 정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족 정책으로 시행 중인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모자가족의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면접교섭, 자녀양육비 이행과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매개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이행중인 정책 효과를 탐색하고, 정책이 의도한 목적대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11~19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No. 2104/001-021). 수도권의 한부모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및 온라인 카페들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하였으며, 비확률 표집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을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zoom,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양육모와 자녀가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양육모는 178명, 청소년 자녀는 172명으로 총 171쌍의 한부모가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교섭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어떤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양육비가 이행된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고, 공격성은 더 낮았다. 둘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모두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두 정책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성립하지 않았다. 넷째, 면접교섭만 이행된 집단 또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가 전부 이행되지 않은 집단에 속한 청소년보다 자녀양육비만 이행된 집단에 속한 청소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자녀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미성년 자녀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현행법에 따라 그 이행이 지속적으로 장려되는 동시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본 연구결과는 최근 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법률로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자녀양육비 이행이 왜 청소년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동거가족인 양육모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면접교섭만 이행한 경우보다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자녀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았던 결과는 현재 시행되는 면접교섭의 효과에 의구심을 지니게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면

접교섭은 양육모의 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면접교섭이 이행된 경우 월 1회 미만으로 만난 비율은 약 70%에 달하였고, 만나서 함께 보낸 시간도 6시간 미만이 약 60%였다. 이러한 면접교섭 이행의 절대적인 양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을 이행하더라도 비양육부가 실질적인 친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양육부의 양육참여의 질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면접교섭 시간에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은 대부분 식사하기였고, 다음으로 쇼핑하기, 함께 놀기 순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와 대화하거나, 공부나 과제를 같이 한다는 응답은 적었다. 제한된 시간에 식사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며 조언하려는 태도가 비양육부모에게 요구된다(Adamsons & Johnson, 2013; Amato & Gilbreth, 1999; King & Sobolewski, 2006). 이를 통해 자녀는 '양육자'로서 비양육부모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은 그 여부만큼 양과 질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Nielsen(2018)은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양육의 질이 동반되어야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녀의 시간 중 최소한 35%부터 약 50%가량을 비양육부모와 보내는 공동양육(shared parenting)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면접교섭의 빈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최소한의 시간의 양이 확보되어야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주장한다(Braver & Lamb, 2018; Nielsen, 2014). 국내에서 면접교섭 시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무엇을 하고, 얼마만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이혼한 양육모와 그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최신의 쌍(dyad)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의 편견이나 오차 발생을 줄이고,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하여(Ganong et al., 2012) 한부모가족의 적응,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특성 등 최근 한부모가족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국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 설계에 한부모가족을 고려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률이나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인 한부모가족의 실생활에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이행이 장려되고 있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각 정책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적응이 매개하는지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정책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면접교섭 이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면접교섭, 자녀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정책, 정책효과

학 번 : 2015-31158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연구 문제 ····· 9

제 2 장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0
제 1 절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과정 ····· 10
1. 면접교섭 이행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성 ····· 10
2. 자녀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성 ····· 15
제 2 절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 20
제 3 절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4
1. 면접교섭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24
2.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32

제 3 장 연구방법 ····· 36
제 1 절 연구 대상 ····· 36
제 2 절 자료 수집 ····· 37
제 3 절 조사 도구 ····· 39
1. 독립변수 ····· 39
2.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 ····· 41
3. 통제변수 ····· 44
제 4 절 자료 분석 ····· 46

제 4 장 연구결과 ····· 47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47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7
2. 주요 변수에 대한 차이 검정 ····· 54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63
제 2 절 연구모형 분석 ····· 67
1.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69
2.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78
3.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87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96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96
제 2 절 결론 및 제언 ····· 101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07

참고문헌 ····· 110
부록 ····· 123
Abstract ····· 133

표 목 차

[표 2-1] 면접교섭권 및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연혁 ····· 11
[표 4-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8
[표 4-2] 면접교섭 및 양육비 이행 특성 ····· 50
[표 4-3] 면접교섭 이행에 대한 세부정보 ····· 53
[표 4-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면접교섭 여부의 차이 ····· 56
[표 4-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비 수령 여부의 차이 · 57
[표 4-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행유형의 차이 ····· 58
[표 4-7]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 60
[표 4-8]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요인에 따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차이 ····· 62
[표 4-9]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66
[표 4-10] 청소년 자녀 측정모형 모형적합도 ····· 69
[표 4-11] 청소년 자녀 측정모형 요인적재값 ····· 71
[표 4-12] 청소년 자녀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 71
[표 4-13]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모형적합도 ····· 72
[표 4-14]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직접효과 분석 결과 ····· 74
[표 4-15]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통제변수 분석 결과 ····· 74
[표 4-16]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이행유형) 모형적합도 ····· 75
[표 4-17]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이행유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77
[표 4-18]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이행유형) 통제변수 분석 결과 77

[표 4-19] 양육모 측정모형 모형적합도 ····· 78
[표 4-20] 양육모 측정모형 요인적재값 ····· 80
[표 4-21] 양육모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 80
[표 4-22] 양육모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모형적합도 81
[표 4-23] 양육모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직접효과 분석 결과 ····· 81
[표 4-24] 양육모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통제변수 분석 결과 ····· 83
[표 4-25] 양육모 구조모형(이행유형) 모형적합도 ····· 84
[표 4-26] 양육모 구조모형(이행유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 86
[표 4-27] 양육모 구조모형(이행유형) 통제변수 분석 결과 ····· 86
[표 4-28] 한부모가족 측정모형 모형적합도 ····· 87
[표 4-29] 한부모가족 측정모형 요인적재값 ····· 89
[표 4-30] 한부모가족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 90
[표 4-31] 한부모가족 구조모형 모형적합도 ····· 91
[표 4-32] 한부모가족 직접효과 분석 결과 ····· 94
[표 4-33] 한부모가족 구조모형 통제변수 분석 결과 ····· 95

그 림 목 차

[그림 4-1] 청소년 자녀 측정모형 ····· 70
[그림 4-2]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 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 73
[그림 4-3]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 이행유형 ····· 76
[그림 4-4] 양육모 측정모형 ····· 79
[그림 4-5] 양육모 구조모형: 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 82
[그림 4-6] 양육모 구조모형: 이행유형 ····· 85
[그림 4-7] 한부모가족 측정모형 ····· 88
[그림 4-8] 한부모가족 구조모형 ····· 93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한부모가족에서 이혼 당사자인 부와 모는 더이상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으나, 자녀는 각 부모와 여전히 가족관계를 유지한다. 한쪽 부모는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편 다른 부모는 자녀와 생활하지 않는다. 자녀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가족으로서 만날 권리가 있으며, 비양육부모[1]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한다. 이러한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특수성은 한부모와 자녀의 동거라는 가족구조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자녀와 양육부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족 정책으로 시행 중인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모자가족의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근거는 자녀인 아동[2]의 권리 보장이다. 즉 자녀와 비양육부모가 만나는 것과, 자녀양육비를 비양육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이라는 가정이 정책에 전제되어 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이혼한 양쪽 부모와 모두 교류하면서 변화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Boyan & Termini, 2003). 자녀양육비 이행은 이혼 전과 유사한 수준에서 자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법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효과가 학문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두 정책의 근

---

1) 부나 모를 의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 양육하는 부나 모를 부모로 통일하여 기술함

2) 본 연구에서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함

거가 되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유익하다는 결과는 모두 외국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같은 제도와 법률이라도 적용되는 사회 간 문화가 상이하면 그 기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종고, 1995). 서구사회와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족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형태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점 등 많은 면이 상이하다.

미국에서 학령기 아동의 약 36%는 어떠한 한 시점에서 모자가족에 속하여 아동기를 보낸다(Coates & Phares, 2019). 이는 한부모가족이 미국사회에서 소수가 아니며, 특별하지 않은 가족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혼 후 자녀와 양육부모로 구성된 국내 한부모가족과 달리 국외 한부모가족은 미혼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Huang & Han, 2012; Koppen, Kreyenfeld, & Trappe, 2018). 이에 국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가 주로 이혼 후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이행된다면, 국외의 경우 비양육부모 뿐 아니라 미혼의 비동거중인 아버지도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의 대상이다(Adamson & Johnson, 2013; Jackson, Choi, & Preston, 2015). 이렇듯 여러 면에서 다른 환경임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에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아무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Amato, 1993; Amato & Keith, 1991). 메타분석 결과 면접교섭의 효과 크기는 미미하거나 의미가 없음에 따라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Adamsons & Johnson, 2013; Amato & Gilbreth, 1999).

면접교섭의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되지 못하는 맥락으로 주로 높은 커플 간 갈등이 지적된다(Braver & Lamb, 2018; Emery & Dillon, 1994). 이혼이나 이별 후 커플은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적인 또는 갈등

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Russell, Beckmeyer, Coleman, & Ganong, 2016), 헤어진 커플의 관계가 협력적이면 면접교섭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갈등적이면 면접교섭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Amato & Rezac, 1994). 우리나라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이혼 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비양육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비율은 65.3%에 달하였다(김은지 외, 2018). 한국사회에서 상당수의 이혼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점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자녀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에 속한 아동이 이혼 전과 유사한 생활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따라 아동의 복리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필요성이 분명한 자녀양육비 이행도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행중인 법률의 효과성 측정과 연관된다. 메타분석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적응과 웰빙에 긍정적으로 연관됨을 보고한 Amato와 Gilbreth(1999)와 달리, Adamsons와 Johnson(2013)은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 크기가 미미하여 자녀에게 실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내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면접교섭이나 자녀양육비 이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이검정을 실시하거나(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차경옥, 1998), 회귀분석으로 자녀에게 면접교섭의 영향을 검증하였고(이삼연, 2002; 전수정, 2003),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손서희, 2013; 유희정, 2005). 이러한 연구는 각 시기별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게 해준다. 그러나 자료가 오래 되었고, 연구가 많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자료로 보다 엄정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 국내에서 시

행중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분석방법으로 검토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가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연구는 드물다. 이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가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한부모만 조사대상이며, 한부모 자녀의 적응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한계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현 시점에서의 적응과 이후 생애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애사건이다. 청소년기도 발달의 변화를 경험하는 전이 시점이므로, 이혼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평균 11.8세이며, 초등학생이 35%, 중학생 이상이 50%였다(김은지 외, 2018). 이에 본 연구는 면접교섭의 주체이자 자녀양육비 이행의 대상이 주로 되는 11세 이상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 요인으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볼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신체·인지·사회·정서를 포함한 총체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중요하다(임선희, 명재신, 2016). 보편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측면, 우울은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냄에 따라 서로 상반된 개인의 내적 변인으로 대표된다(백승희, 전현정, 이정민, 정혜원, 2019). 주변 환경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청소년기에 자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가는 심리적 적응의 중요한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은 급격한 심리정서적 및 신체적 변화와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이주리, 2008). 더욱이 청소년기 부모의 이혼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되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보다 촉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이삼연, 2002).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의 공격성은 아동기의 공격적인 행동과 성인초기 반사회적 행동을 이어줄 수 있으며, 성인 초기

의 공격성 및 범죄 행동으로 연관되었다(Petras et al., 2004). 이러한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적응의 지표로 판단된다.

생활만족도는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이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생활만족도는 정서적 상태라기보다 인지적 판단 과정으로, 개인이 설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청소년기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상태의 결과인 동시에 문제행동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서정아, 김혜원, 2013) 청소년의 발달에 연관되어 있다. 이에 생활만족도를 청소년 자녀의 적응의 주요 지표로 간주하고자 한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모에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미치는 영향도 검증할 것이다. 관련된 국외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선행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소홀했던 경향이 있다(Coates & Phares, 2019). 이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현대사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고 발전됨(김유미, 2013; 이화숙, 2009)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자녀와 양육부모로 구성되므로, 양육부모의 적응과 웰빙은 자녀의 적응과 웰빙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Coates & Phares, 2019; King & Heard, 1999). Belsky(1984)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정서적 상태는 부모의 역할과 행동으로 이어져 자녀의 심리·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면접교섭이나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시 자녀의 심리·정서와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양육모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탐색할 것이다. 가족이 하나의 단위임을 고려할 때 동거 가족인 양육모에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미치는 영향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복리와 권리를 위한 정책(김유미, 2013; 이화숙, 2009)임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부수효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양육모의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한 한부모의 적응은 다차원적인 심리사회적 개념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의 생활만족도와, 부정적인 측면의 우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이경희, 2006). 우울은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므로, 개인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적 평가인 생활만족도와 함께 양육모의 적응의 지표로 사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적응이 매개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 살펴보고,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부모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시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효과를 간과하였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더라도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녀가 자녀양육비 이행 사실을 몰라도 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 이행으로 정서적 웰빙이 증진될 경우 그 긍정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oates와 Phares(2019)는 10편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 주로 양육모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는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자녀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살펴볼 근거가 된다. 양육부모를 통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한부모가족 내 역동과 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최선의 이익인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비양육부가 면접교섭만 이행한 경우,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모두 이행한 경우와 둘 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수학적으로 둘이라는 공식처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같이 이행하는 것이 면접교섭이나 자녀양육비를 각각 이행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욱 큰지 검증하고, 이행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효과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각 순수한 효과를 이해하는 동시에 두 정책의 공동이행 여부에 따른 총체적 효과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Ganong, Coleman과 McCaulley(2012)는 이혼 연구가 주로 양육모의 보고에만 의존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자녀와 그 양육부모를 쌍(pair)으로 함께 질문하는 것이 응답의 편견이나 오차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을 피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모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자녀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비양육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명단을 공개하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법률에 의거하여 2019년부터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도 지원 중이다. 이렇듯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을 강화하고,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려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성의 입증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각각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양육모의 적응을 경유하여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시행중인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의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실제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개선 요소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1.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유형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은 양육모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유형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각각 매개하는가?

제 2 장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과정

1. 면접교섭 이행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성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혼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관련 정책이다. 1991년 민법에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어 시행되었고, 2007년 12월 민법 개정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2016년 민법 개정에 따라 면접교섭의 범위가 특정 상황 하에[3] 아동의 조부모에게까지 확대되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의해 2019년부터 지원되고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이는 2017년 면접교섭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20 가구의 양육비 이행률이 약 88%로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른 결과이다(박복순, 2019). 면접교섭권 관련 법률 연혁은 [표 2-1]에 제시하였다.

3)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즉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및 그 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는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표 2-1] 면접교섭권 및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연혁[4)]

법률	이혼법 및 제도	개정	시행
민법	▶ 이혼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 평등한 권리 인정(제837조 제1항) ▶ 면접교섭권 신설(제837조의2) - 법원은 당사자청구에 의해 면접교섭 배제/제한 가능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신설(제839조의2)	1990. 01.13.	1991. 01.01.
민법	▶ 이혼숙려제도 도입(미성년 자녀: 유-3개월, 무-1개월)(제836조의 2) ▶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방법, 자녀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제837조 제2항) ▶ 면접교섭권이 비양육부모 및 자녀의 권리임을 명시(제837조2, 제1항)	2007. 12.21.	2007. 12.21.
민법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의무화(제836조의2, 제5항)	2009. 05.08.	2009. 08.09.
가사 소송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급 지급명령' 신설(제63조의3)과 '이행명령' 강화(제64조)	2009. 05.08.	2009. 11.09.
민법	▶ 재산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녀의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등 준용규정을 법조문에 명시(제843조)	2012. 02.10.	2012. 02.10.
양육비 이행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포함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채권 추심지원, 상담 및 법률지원, 관련 연구·교육과 홍보 진행 등 명시(제7조)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절차의 개선 - 주민등록표 열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 요청(제13조, 제24조) ▶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대한 명시(제15조)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조사 진행(제16조) - 금융정보 요청(제17조), 환급금 압류(제20조), 체납자료의 제공(제21조)	2014. 03.24. **제정**	2015. 03.25.
민법	▶ 면접교섭이 조건부로 조부모에게 확대됨(제837조의2, 제2항)	2016. 12.02.	2017. 06.03.
양육비 이행법	▶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제3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 등(제14조 제3항) - 기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확대 ▶ 양육비 이행청구 및 조사: 양육비 채권추심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 내용 명시(제15조 제1항) ▶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관한 조사 가능(제16조 제2항)	2018. 03.27.	2018. 09.28.

4) 변주수(2017) 논문의 [표 2-2]를 수정·보완 및 확장함

양육비 이행법	▸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실시 (제7조 제2항 제1호의2, 제10조의2 신설) ▸ 양육부모가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신변 관련 정보가 비양육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조치 강구 (제21조의2 신설)	2018. 12.24.	2019. 06.25.
양육비 이행법	▸ 운전면허 정지처분 조항 신설(제21조의3) ▸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 양육비의 강제 징수 강화(제14조 제5항)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요청 (제17조 제1항) ▸ 현장지원반 구성과 운영 신설(제18조의2)	2020. 06.09.	2021. 06.10.
양육비 이행법	▸ 출국금지 조항 신설(제21조의 4) ▸ 명단 공개 신설(제21조의5) ▸ 양육비 미이행자 벌칙 신설(제27조 제2항 제2호)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내 벌금	2021. 01.12.	2021. 07.13.

면접교섭권은 본래 이혼 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로 인정되었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점점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곽민희, 2013; 김수정, 2005).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의 비준 이후, 2007년부터 민법을 개정하여 자녀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 가능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고해졌다(김유미, 2013). 협약 제9조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짐을 선언한다.

협약에 따라 개정된 면접교섭권의 주요 목적은 자녀가 이혼 후에도 양부모와 유대관계를 지속함에 따라 자녀의 정서 안정 및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김민지, 2017; 김수정, 2005; 김유미, 2013). 한국 민법은 2005년부터 제912조에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가 친권법의 기본 이념임을 선언하고 있으며(김유미, 2013), 면접교섭권도 이러한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이 장려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와 양육부모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면접교섭은 제한되

거나 중단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이행법’ 제10조의2).

면접교섭권에 관한 논의사항으로 크게 면접교섭권의 확대 여부와 면접교섭권의 강제 여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면접교섭권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존재한다. 면접교섭권의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은 비록 2016년에 면접교섭의 범위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에게 확대되었으나, 그 주체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조부모나 계부모 등 자녀와 면접교섭권으로 보호해야 할 유대관계로 판단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형제자매 간 면접교섭을 허용해주어야 함을 피력한다(김민지, 2017).

반대로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지지하는 경우,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기회에 조부모는 함께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면접교섭의 확대는 양육부모의 양육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내세운다(현소혜, 2015). 이러한 두 입장은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내 면접교섭권 확대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자녀와 가족공동체로 함께 살았던 자, 조부모와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면접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한다(최민수, 2018). 프랑스에서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명문화되었다(곽민희, 2013). 영국은 계부모, 3년 이상 동거한 친족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현소혜, 2015).

각국의 절대적인 판단의 준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다. 각국의 사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도, 여러 환경체계가 다른 국내에서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선진국의 입법례를 따르기보다 국내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현실적 필요와 고유한 문화,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사회에 맞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현소혜, 2015).

두 번째로 면접교섭권의 강제 여부는 민법이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만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

는 경우,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가와 연관된다(김유미, 2013; 박득배, 2018). 면접교섭권은 자녀 뿐 아니라 비양육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자녀의 희망에 따라 비양육부모를 강제하여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김유미, 2013). 이에 대해 박득배(2018)는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절차 보장을 주장하였다.

유사하지만 다른 사례로 양육부모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비양육부모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3), 양육부모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렇듯 양육부모의 면접교섭 거부는 법률에 따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정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녀가 인지한다면 자녀는 비양육부모를 만나는 것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유희정, 2005; King & Heard, 1999; Johnston, Kline, & Tshann, 1989).

마지막으로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양육부모가 면접교섭을 불편해하거나 강하게 거부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자녀가 면접교섭을 꺼려하면 그 마음이 진실한지 상담을 진행하여 알아보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대로 면접교섭에 대한 양육부모의 반응에 자녀가 눈치를 보며 영향을 받는다면, 비양육부모를 만나고 싶은 자녀의 마음이 진실이라도 자녀에게 면접교섭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 알 수 없다. 혹은 비양육부모가 유책배우자이며 자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자녀는 면접교섭을 기피할 수 있으나(유희정, 2005), 현재까지 면접교섭으로 인한 학대 위험 또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조성할만한 상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독일에서 면접교섭의 전제요건은 자녀의 복리이며, 10세 이상 청소년

자녀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요구에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자녀의 태도를 존중한다(최민수, 2018). 미성년 자녀가 외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양가감정을 지닐 수 있음에 따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의사가 자녀의 복리에 합치하는 한도에서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독일 법원 실무에서는 자녀복리의 위협에 자녀가 면접교섭을 분명히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최민수, 2018).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자녀의 면접교섭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영민, 2014).

2. 자녀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성

자녀양육비 이행이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육비이행법’ 제1・2조). 2007년 개정 민법에 따라 협의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해야 하게 되었고, 2009년 민법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육비’라는 용어가 법문에 규정되었다(배소영, 2016). 2009년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이 명시되면서, 양육비는 단순히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넘어서 이행의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였음에도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했다(박복순 외, 2020). 이에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히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에 근거하여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에 관련한 상담과 법률지원,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

강화를 꾀하고 있다(‘양육비이행법’ 제7조 제2항).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법률 연혁은 [표 2-1]에 제시하였다.

2009년 5월 신설된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간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 의사 확인 전에 가정법원의 양육에 관한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한다(『민법』제836조의2 제4항).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 등의 상황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민법』제837조 제3·4항).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제837조에 따라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협의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민법』제837조 제3·5항). 이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최선의 이익’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의 근거로 당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빈곤을 방지하는 것, 법률적으로 양 부모의 자녀부양 의무, 실용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빈곤 예방은 이혼 후 여성 가구주인 한부모가족은 빈곤계층이 되거나, 경제적 취약집단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김은지 외, 2018; 김현정, 정순희, 2001; Northrop, 1990)에서 출발한다. 여성 한부모의 빈곤은 곧 자녀의 빈곤으로 연결되는데, 빈곤은 한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현숙, 2017; Brody & Flor, 1997). 실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구인 경우 높다(고선강, 2014; 류연규, 최현수, 2003).

자녀양육비는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고된다. 자녀양육비가 증가할수록 미국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빈곤에 처할 확률이 감소하였고(윤홍식, 2003), 많은 선진국에서 자녀양육비로 인한 아동빈곤율의 감소 비율은 아동 및 가족급여로 인한 아동빈곤율의 감소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강지원, 2010). 국

내의 경우 자녀양육비를 받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탈피하는 가족에게 자녀양육비가 아동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부모 가족의 빈곤의 감소는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직결된다.

법률적으로 자녀양육비의 이행은 이혼 이후에도 자녀부양의 의무가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비양육부모가 양육자가 아니면서 친권자도 아닌 경우, 자신에게 자녀부양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연구에 따르면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의 부양의무는 이혼한 부모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박병호, 김유미, 1994). 양육비이행법은 부모의 혼인상태나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양육비 이행법' 제3조 제1항). 즉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부양 의무가 있다.

자녀에 대한 친권이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가 아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실질적인 법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김연, 2012).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김상용, 1997) 민법은 2014년 10월 친권이 상실되거나 일시 정지 및 제한된 경우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명시하였다(『민법』 제925조의3). 현행법이 추구하는 양쪽 부모의 자녀부양 의무는 협약 제18조의 자녀의 양육과 발달에 양쪽 부모가 우선적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과 방향성의 측면에서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은 한부모의 복지 의존과 국가의 재정 부담을 모두 경감하는 방안이 된다(강지원, 2010).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평가 시 사적이전소득인 자녀양육비가 포함된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초생활수급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양육부모는 국가의 복지 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반대로 비양육부모가 약속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부모가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분류되어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자녀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4,5),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양육비이행법' 제27조)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자녀양육비를 불이행하는 비양육부모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실제 효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먼저 비양육부모의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전면허 정지의 예외 사례로 인정해주는데, 이에 대하여 생계유지의 목적과 같이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재를 적용해야 양육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서영, 2021).

출국금지는 미지급한 자녀양육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동안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 평균적으로 이행된 자녀양육비는 2018년 기준 56만원이지만,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실제 지급받은 자녀양육비는 평균 약 39만원 정도였다(김은지 외, 2018).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가 월 20~30만원 수준으로 보고된다(권혜림, 2021). 이에 40만원으로 출국금지 기준인 5천만원을 계산하면 10년 이상, 3천만원이라도 6년 이상 자녀양육비를 미지급해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출국금지의 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측정된 것이다.

명단공개는 자녀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양육부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직업 등은 공개하지만, 신상공개와 달리 얼굴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동명이인이 많고 비양육부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명단공개가 심리적 압박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권혜림, 2021; 김서영, 2021). 자녀양육비를 불이행한 비양육부모의 신상공개를 진행해온 단체 Bad fathers[5]에서 자녀양육비 지급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체면사회인 한

5) 2018년 7월 처음 등장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

국사회에서 사진이 공개됨에 따른 심리적 압박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행정조치가 감치명령까지 받은 후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 많아진다는 점에서 양육부모가 지칠 수 있다. 제재가 감치명령까지 받은 경우 이뤄진다는 조건을 삭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서영, 2021).

미국에는 자녀양육비 이행체계가 자녀와 비동거중인 아버지에게 덜 적대적으로 개정되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보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Allport et al., 2018). 미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는 자녀양육비의 연체료를 강제하기 위하여 자동차 면허 취소, 세액환급비용 징수, 감옥행과 같은 처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Edin, Nelson, Butler, & Francis, 2019; Turner & Waller, 2017). 이에 자녀양육비 연체료가 높아질수록 양육모와의 관계의 질이 낮아져서 자녀에 대한 비양육부의 양육참여가 낮아졌다(Turner & Waller, 2017).

Edin 외(2019)는 자녀양육비를 이행하는 동시에 자녀와 만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가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함을 피력하였다. Allport 외(2018)는 비양육부가 직업을 찾도록 돕고, 재정적 기여보다 자녀양육 참여로의 기여를 더욱 장려하는 등 미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가 비양육부에게 보다 지지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강력한 양육비 이행체재의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김현진, 2020)과, 국내 자녀양육비 관련 법률이 자녀양육비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향으로 향하는 것에 관해 숙고해야 할 여지를 제공한다.

개 시행이 시작되면서, 2021년 10월 21일에 폐쇄할 것이라고 인터뷰하였음(김서영, 2021).

제 2 절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아동권리관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기반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Child's best interest)을 정책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2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된다(제1조).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의 내용은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영역으로 분류된다(이재연 외, 2018).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은 내용적 측면에서 이 4대 영역에 포함되는데, 각 영역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한 조항이 여러 영역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이봉주, 신원영, 201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가치를 내포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 '차별금지'(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의 의사 존중'(제12조)의 4개 조항을 제시하였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이러한 일반 원칙 중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은 아동권리협약의 핵심이다(이재연 외, 2007).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제3조 제1항). '최선의 이익'이란 개념은 영·미권 가정법원에서 아동의 양육권자 판단과 연관되어 발전된 것이며, 아동 최선의 이익 조항은 아동권리협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전체 조항의 이행을 아우르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황옥경 외, 201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조항은 규정

자체로 국가의 의무를 발생시키며, 법원에서 인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항이다(이경은, 2016).

아동권리관점은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성희자, 2012), 아동 최선의 이익이 정책과 실제 영재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이경은, 2016; 이희정, 2010; 조흥식, 2000), 아동권리관점에 따른 영유아보육법의 평가(강현구, 2014) 등을 통해 꾸준히 보급되었다.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60개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받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2021)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골자로 하는 아동권리관점이 국내에 상당히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도입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권리관점이 반영되어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평가도구이다(김은정, 2019).

면접교섭권은 초기에는 이혼 후 자녀를 비양육하는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점차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 무게의 중심이 향하고 있다(김수정, 2005). 면접교섭권은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6]과 연관된다.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시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다. 당시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을 비양육부모의 권리로만 규정하였다(윤진수, 2005). 이후 200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부모의 친권 행사에 관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이 민법에 포함되고,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이 부여된 것은 모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 따라 법률에 아동권리관점이 반영된 것(김유미, 2013)으로 간주된다.

자녀양육비 이행은 양육부모와 자녀를 위한 정책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녀의 복리와

6)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김현진, 2020). 자녀양육비 이행은 아동권리협약 제27조와 제18조에 연관된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4항[7]은 '재정적 양육비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다(황옥경 외, 2015). 국가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7조 제4항). 비양육부모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양육의 책임을 지도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비양육부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김승권 외, 2009).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밝힌다(제27조 제2항).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8]은 자녀의 양육과 발달의 일차적 책임이 양쪽 부모 모두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이러한 부와 모 공동의 책임은 경제적 책임을 포함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안을 모두 포괄한다(김승권 외, 2009). 즉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는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과 양육에 관련된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 이러한 조항에는 양 부모와의 교류와 양 부모의 공동책임이 미성년 자녀의 발달에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에 대한 국외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도 부모의 결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으로(Maccoby, Depner, & Mnookin, 1990), 자녀의 웰빙이나 적응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의 준거로 삼고 있다(Amato & Gilbreth, 1999; Adamsons & Johnson, 2013; King & Heard, 1999; Nielson, 2014). 국내에서 이혼 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양 부모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

7)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8) "당사국은 양쪽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

이행을 장려하는 것은 이혼한 한부모가족 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 보장을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적응 수준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준거로 사용하여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동일한 내용의 정책을 이행하더라도 각 정책이 실행되는 맥락인 법률체계와 사회문화 등에 따라 정책의 이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최종고, 1995). 이혼한 한부모가족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문화가 국외와 다른 한국에 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국내 이혼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는가?'라는 질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면접교섭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면접교섭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 즉 면접교섭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비일관적이다.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자녀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32편의 연구를 고찰한 Amato(1993)에 따르면 16편의 연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자녀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으나, 7편의 연구는 자녀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9편은 자녀의 웰빙에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이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이혼 후 자녀를 비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간 만남의 빈도 및 관계의 질이 자녀의 웰빙을 담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5편의 논문을 고찰한 Amato와 Keith(1991)는 연구 결과가 통일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6편의 연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웰빙이 높아짐을 보여주었으나, 6편의 연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다른 3편은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많이 만날수록 오히려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음을 제시했다(Amato & Keith, 1991). 이는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연락하고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 법률에 전제된 가정대로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담보하는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국내연구 결과도 혼재되어있다. 질적 연구를 통하여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허용적인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점차 적응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교적으로 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유희정, 2005).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양육부모를 만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비하여 비양육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이삼연, 2002).

반면 전수정(2003)은 비양육부모와 중·고등학생 자녀 간 만남 횟수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차이 검증을 실시한 연구에서 만 10-15세 청소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아예 만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만날 때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윤명숙 외, 2012). 국내에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축적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혼 후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웰빙의 증진을 들 수 있다. 종단연구 결과 자녀와 비동거중인 아버지의 만남이 있을 때 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Jackson, Choi, & Franke, 2009; Spjeldnes & Choi, 2008). 비양육부와의 만남이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과 정서적 웰빙을 높여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유희정, 2005; 이삼연, 2002). 이러한 연구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심리적 유대를 지속하는 것이 유익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혼 후 면접교섭이 자녀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선행연구는 면접교섭이 아니라, 면접교섭과 연관된 요인인 비양육부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이나 비양육부의 양육참여의 질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라고 주장한다. Amato와 Gilbreth(1999)에 따르면 비동거중인 아버지의 방문 빈도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의 효과 크기는 미미하였으며, 아버지와 자녀 간 친밀감이 높거나 아버지가 권위 있는 양육을 한 경우 자녀의 학업 성적이 높고 외면화·내면화 문제는 모두 적었다. 특히 비동거중인 아버지의 권위 있는 양육이 자녀의 적응의 주요 예측변수였다(Amato & Gilbreth, 1999).

Adamsons와 Johnson(2013)도 비동거중인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질이 자녀의 심리정서적 웰빙을 높인 반면, 비동거중인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의 빈도는 자녀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양육참여의 질은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와 연관된다. 제한된 만남 시간 동안에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는 등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것보다 자녀의 과제를 도와주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상담하는 등 자녀양육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비양육부모가 허용적이거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보다 수용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양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Amato & Gilbreth, 1999; King & Sobolewski, 2006).

그러나 Nielsen(2018)은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 향상이나, 비양육부모의 양육참여의 질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녀양육에 보내는 시간의 양과 양육의 질이 함께 수반되어야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녀의 시간 중 최소한 35%부터 약 50%가량을 비양육부모와 보내야 하는 공동양육(shared parenting)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비양육부모와 함께 하는 최소한의 시간의 양이 확보되어야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Braver & Lamb, 2018; Nielsen, 2014).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면접교섭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Coates와 Phares(2019)는 10편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와의 만남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아버지의 참여가 자녀의 인지·행동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단 2편에서만 유의하고, 다른 8편에서는 어머니 요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제시하면서 양육모가 자녀 발달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지적하였다. 면접교섭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혼재된 연구결과와 주장을 생각할 때, 면접교섭이 양육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되지 못하는 맥락으로 주로 높은 부부갈등이 지적된다. 이혼한 부모가 갈등을 지속하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만남은 자녀에게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였다(Emery & Dillon, 1994). Amato와 Rezac(1994)은 이혼 부모 간 갈등이 높은 경우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이 많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비양육부모의 양육참여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 간 갈등에 노출되거나, 부모의 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Braver & Lamb, 2018). 한국사회에서 이혼 당사자 간 갈등 수준은 높고, 관계는 좋지 않은 편이다(김영희, 한경혜, 2004; 김은지 외, 2018). 이러한 이혼부모 간 관계의 맥락은 국내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혼 부모 간 갈등이 높더라도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공동양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Mahrer, O'Hara, Sandler, & Wolchik, 2018). 종단연구 결과 높은 부부갈등이 있을 경우 1차 시점에서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은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킨 반면, 2차 시점에서는 높은 갈등이 있더라도 비양육부모와 만난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가 비양육부모와 만남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Elam, Sandler, Wolchik, & Tein, 2016). 이에 국외에 비해 이혼부모 간 관계가 보다 나쁠 수 있는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점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비양육자가 유책배우자이며 자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혹은 비양육부모와 만남을 원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이 자녀의 정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유희정(2005)에 따르면 비양육부모의 외도로 이혼한 사례들에서 자녀들은 비양육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았으며, 부모를 만나는 것을 꺼리고 기피하였다.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자녀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칠 효과는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준비되지 않은 면접교섭은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고,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질적연구 결과, 자녀와 만남의 자리에서 비양육부가 양육모에 대한 흉을 보거나 양육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자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것이 나타났다(Kang & Ganong, 2020). 이는 자녀에게 정서적 불편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혼한 양부모와 모두 가깝게 지내는 것이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니와만 친밀한 경우와 내면화·외현화된 문제의 발현 등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King & Sobolewski, 2006)은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도 양육부모와 자녀 간 친밀감과 애착이 높을 때 자녀의 적응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유익을 줄 수 없는 경우 오히려 양육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일상의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내 면접교섭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인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심리·정서적 적응 요인이 매개하는지 함께 탐색할 것이다.

2) 면접교섭이 양육부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외에서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에 관한 연구는 미성년 자녀의 적응이나 웰빙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이혼한 전배우자 간 관계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었음이 지적된다(Masheter, 1991; Slade, 2013). 이혼한 부모에 대한 관심은 이혼 부모 간 갈등의 여부와 정도에 치중하여 부부 간 극심한 갈등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좋은 선택인지 논의되는 방향으로 주로 전개되어 왔다(Healy, Malley, & Stewart, 1990; King & Heard, 1999; Mahrer et al., 2018; Modecki, Hagan, Sandler, & Wolchik, 2015; Nielsen, 2018). 이에 양육부모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모두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면접교섭의 이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삶의 만족도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이혼을 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는 이혼 과정이 보다 갈등적이며(김영희, 한경혜, 2004), 이혼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약 43%가 '비양육부모와 얽히기 싫어서'였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와 교류 정도는 '연락을 원하지 않아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를 차지하였다(김은지 외, 2018).

전배우자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며 이혼한 경우 양육부모는 자녀에게 비양육부모가 나쁜 사람이며 자신 몰래 비양육부모를 만날 경우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는 등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만남을 차단하고,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교류를 단절시켰다(유희정, 2005). 아버지와 자녀가 자주 만나지 않는 상황에 양육모가 만족하는 상황도 존재한다(King & Heard, 1999). 이렇듯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때 자녀와 비양육부모 간 만남은 양육부모에게 스트레스원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의 면접교섭에 협조적인 경우라도 이혼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양육부모의 심리적 웰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King & Heard(1999)에 따르면 비양육부와 자녀의 만남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면접교섭에 대한 비양육부와 양육모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손서희(2013)는 국내 이혼한 부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규칙적인 만남과 자녀양육비 지급임을 밝혔다.

비양육부와 자녀의 만남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이혼 부모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혼한 부가 자녀와의 만남에서 나눈 대화 주제를 살펴본 결과, 공동양육 방식에 대한 불일치(80%), 상대 부모에 대한 험담(70%)이 대화하는 주요 주제에 포함되었는데(Kang & Ganong, 2020) 이는 양육모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혼한 부모에게 자녀양육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양육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부모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됨(손서희, 2013; Moore, 2012)에 따라 양육부모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는 자녀가 자신이나 비양육부의 공백을 경험하는 것에 관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남혜연, 2021). 이에 비양육부가 자녀의 삶에 일정 수준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도 하며, 비양육부와 자녀의 관계가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손서희, 2013). 이 경우 면접교섭의 이행은 양육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면접교섭은 양육부모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닌다.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적은 면접교섭을 보고하였으며(Slade, 2013),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포함한 비양육부의 참여가 높을수록 양육모의 우울은 낮아졌다(Jackson et al., 2015; Jackson, Preston, & Thomas, 2013). 이는 면접교섭이 자녀와 양육부모에 대한

헌신과 지지로 양육부모에게 간주됨(Slade, 2013)에 따라 양육부모에게 정서적 지지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Jackson et al., 2015).

국외에서 면접교섭의 효과로 양육스트레스의 경감이 보고된다. 비양육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양육비와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구성된 비양육부의 참여는 양육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고(Jackson et al., 2013), 비양육부와 자녀의 만남은 양육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켰다(Spjeldnes & Choi, 2008). 그러나 손서희(2012)의 연구에서 국내 비양육부와의 연락·만남의 빈도는 양육모의 부모역할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양육모의 주관적 평가인 비양육부의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모의 부모역할스트레스에 연관되었다(손서희, 2012).

양육부모의 심리·정서적 적응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면접교섭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을 포함한 비양육부의 양육 참여가 양육모의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적응 요인을 경유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한다(Jackson, et al., 2013, 2015). 본 연구는 면접교섭이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면접교섭이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을 각각 경유하여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2.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면접교섭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혼재된 보고와는 달리,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으로 보고되는 편이다. 14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자녀양육비 이행이 아버지와 비동거 중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높이고,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Amato & Gilbreth, 1999). 1990년에 미국의 많은 실증연구는 비동거중인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 교육성취 수준과 웰빙을 높이기 때문에 양육모에게 제공되는 자녀양육비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Amato & Gilbreth, 1999; Seltzer & Meyer, 1994).

비양육부의 자녀양육비 이행은 주로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 및 인지발달에 긍정적으로 연관됨에 따라 자녀의 웰빙을 높인다. 먼저 자녀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억제하였다(Furstenberg, Morgan, & Allison, 1987). 자녀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인지발달과 정적으로 연관되었으며(Choi & Pyun, 2014), 자녀의 학업성적과 학업적 역량을 유의하게 높였다(King, 1994; Knox, 1996). 이외에도 비양육부의 현물 지원은 자녀의 식량 불안정 상태를 감소시켰다(Nepomnyaschy, Miller, Garasky, & Nanda, 2014).

그러나 Adamsons와 Johnson(2013)은 메타분석 결과 자녀에게 미치는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 크기가 의미 없게 나왔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Coates와 Phares(2019)는 어머니 요인을 통해 자녀에게 미치는 자녀양육비 이행효과를 살펴볼 것을 피력하였다. 국외에서 면접교섭이나 자녀양육비 이행을 포함한 비동거중인 아버지의 참여는 양육모의 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나 우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과 인지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Choi, Palmer, & Pyun, 2014; Choi & Pyun, 2014; Jackson, et al., 2013, 2015).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단분석 결과 국내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1차 시점에서 낮을수록 동 시점에서 자녀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모두 높았다(김현숙, 2017). 이는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가 속한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줄 경우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 이행을 하는 것은 비양육부모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지니며(정이윤, 2016), 자녀양육비 이행도 면접교섭을 증가시킬 수 있다(신영미, 진미정, 2021; 조성희, 2018; Westphal, Poortman, & Lippe, 2014). 자녀양육비 이행은 면접교섭을 연 25일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 Argys, Howard, & Butler, 2004). 이렇듯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은 면접교섭의 기회 증가와 연관됨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함께 연관될 가능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인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 요인을 경유하여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비 이행은 양육부모의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를 이행할 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손서희, 2013; Moore, 2012). 이러한 견지에서 자녀양육비 이행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녀양육비 지원이 증가할수록 이혼 부모 간 관계의 질이 높아졌다(Hofferth, Forry, & Peters, 2010). 이는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양육부모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로 판단된다.

자녀양육비 이행은 비양육부모의 양육참여에 대한 양육부모의 제한(gate-keeping)과 연관될 수 있다. 비양육부가 자녀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양육모는 자녀와 비양육부의 만남을 제한하였다(Moore, 2012). 반대로 자녀양육비가 이행될 경우 모자가족에서 면접교섭의 승산이 높았다(신영미, 진미정, 2021). 역방향도 존재한다. 양육모가 자녀와 비양육부 간 만남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부는 위협의 방법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을 보류하였다(Moore, 2012). 정기적으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던 비양육부가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자녀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도 보고된다(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2018). 이러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양방향적 관계는 계량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정이윤, 2016; 조성희, 2018; Westphal et al., 2014).

자녀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을 높임에 따라 양육부모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양육비의 이행은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을 낮춘다(강지원, 2010; 윤홍식, 2003; Fox, 2019). 한부모의 경제적 궁핍함이 높을수록 한부모의 우울이 높았다(Choi, 2010; Spjeldnes & Choi, 2008).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백승희 외, 2019; Coates & Phares, 2019; Jackson et al., 2013)을 고려할 때, 자녀양육비 이행으로 인해 양육모의 적응이

높아지는 것은 자녀의 적응에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양육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면 함께 사는 자녀의 적응도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비양육부의 자녀양육비 이행 여부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각각 매개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면서, 11~19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한부모 여성과 그 자녀이다. 먼저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사회 인프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지역마다 공유하는 문화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비교적 동질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도권의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 거주지역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 이행에 관한 연구로, 이혼한 한부모가족만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혼인상태는 이혼이 77.6%를 차지한다(김은지 외, 2018). 2018년에 한부모가 여성인 경우는 65.5%, 남성인 경우는 34.5%이었다(김은지 외, 2018). 양육모와 양육부는 가구경제수준,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등의 측면에서 동일 집단이라기보다 다른 필요를 느끼는 각기 다른 집단이다(신영미, 진미정, 2021). 이에 이혼 한부모가족의 약 2/3에 해당하는 여성 한부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육모가 재혼한 경우 더 이상 한부모가 아니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내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평균 11.8세이며, 초등학생이 35%, 중학생 이상이 50%였다(김은지 외, 2018). 이에 본 연구는 자기 보고가 가능한 11-19세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모두 각각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어머니만 참여하거나 자녀만 참여한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 2 절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1년 4월 19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1~19세 청소년 자녀를 양육 중인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육모용 및 청소년용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지에 대한 IRB 승인은 2021년 4월 12일에 이루어졌다(No. 2104/001-021).

이혼한 한부모가족은 노출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구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 경기도와 인천의 한부모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및 온라인 한부모 카페들에 협조를 구하고,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홍보하여 비확률 편의표집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설문조사 참여자가 연구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지인을 소개해주거나, 온라인 한부모 카페에 홍보해주는 등의 눈덩이표집도 병행되었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수도권의 관련 기관 및 온라인 카페의 관리자에게 메일이나 쪽지를 통해 사전 연락 후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안내하고, 협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협조를 약속 받은 기관과 온라인 카페들에 홍보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며,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양육모에게 전화하여 설문의 목적과 소요시간,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본인과 자녀의 설문 참여에 양육모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자녀에게 연락 가능한 시간을 문의하였다. 자녀에게 Zoom, 영상통화, 전화통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연락하였으며, 본인 확인 및 설문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자녀도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IRB 승인을 받은 설명문 및 동의서(연구참여자 보관용, 연구자 보관용)를 양육모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달하여 양육모와 자녀가 모두

자필서명한 후 연구자에게 사진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양육모와 자녀가 자필서명하여 전달한 동의서 중 연구참여자 보관용 동의서에 연구자가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동의서를 문자로 전달하였다.

양육모와 자녀가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양육모와 자녀에게 각각 해당 설문 링크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은 서베이몽키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이해되지 않는 문항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전화통화나 Zoom을 통해 연구자에게 문의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연구자는 응답을 살펴본 후 양육모나 자녀가 응답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으며, 해당 응답을 데이터에 입력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이 빠짐없이 완료된 후, 양육모와 자녀에게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각각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및 온라인 카페 관리자에게 연락과 방문을 실시하였고, IRB 승인을 받은 이후 2021년 4월 16월부터 협조기관 및 온라인 카페에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총 374명의 양육모에게 연락하여 192쌍의 양육모와 청소년에게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를 완료한 양육모는 178명, 청소년 자녀는 172명으로 최종 171쌍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다가 불편한 기분이 들 경우 언제든 설문조사를 그만 둘 수 있다는 설명문의 안내에 따라 참여했던 자녀나 양육모가 설문조사를 도중에 중단함에 따른 결과이다.

제 3 절 조사 도구

1. 독립변수

1)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 [청소년 응답]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손서희(2012), 윤명숙 외(2012)와 Sano 외(2008)를 참고하여 청소년에게 비양육부와의 실제 만남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와의 만남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① 만난 적 없음, ② 불규칙적으로 만남, ③ 규칙적으로 만남'으로 보기를 구성하였다.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는 ①을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②와 ③을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다음 사용하였다.

면접교섭의 이행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면접교섭의 빈도를 질문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⑥ 6번, ⑦ 7번 이상'의 보기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 만나는 장소와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을 질문하였다. 아버지와 만날 때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은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하루 미만, ⑧ 1박 2일,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의 보기로 질문하였다.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는 '① 면접교섭센터, ② 현재 사는 집, ③ 아버지가 사는 집, ④ 친척 집, ⑤ 음식점, ⑥ 만날 때마다 다름,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로 문의하였다. 아버지와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의 보기는 Amato와 Gilbreth(1999) 및 King과 Sobolewski(2006)를 바탕으로 '① 식

사하기, ② 영화 보러감, ③ PC방/노래방에 감, ④ 쇼핑하기, ⑤ 고민을 이야기함, ⑥ 과제/공부를 같이 함,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로 구성하였으며,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자녀양육비의 지급 여부 [양육모 응답]

본 연구의 다른 독립변수인 자녀양육비의 지급 여부는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양육모에게 질문하였다. 자녀양육비의 지급 여부는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비양육부(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① 받은 적 없음, ② 받은 적 있음' 중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추가 정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양육모만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지급의 정기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비양육부(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① 정기적 지급(약속된 날짜에 지급, 혹은 규칙적으로 지급), ② 비정기적 지급(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음, 혹은 지급 일시를 예측할 수 없음), ③ 일시 지급'이라는 보기를 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령한 자녀양육비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비양육부(전 배우자)가 실제 지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을 원 단위로 기입하도록 질문하였다.

3)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유형

비양육부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자녀양육비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자녀양육비를 이행하고 면접교섭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모두 이행한 경우, ④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고 질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및 매개변수

1) 생활만족도 [청소년, 양육모 응답]

생활만족도는 Diener 외(1985)가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에게 사용하려고 번안한 버전을 바탕으로, 이은경(2004)이 번안한 버전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고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로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내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를 들 수 있다. 원 척도는 5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응답의 용이성과 명확성을 모두 고려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생활만족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양육모용 $\chi^2(5)=4.84$, $p>.05$, RMSEA=.00, CFI=1.00, TLI=1.00, SRMR=.02; 청소년용 $\chi^2(5)=8.90$, $p>.05$, RMSEA=.07, CFI=.99, TLI=.98, SRMR=.02), 양육모용과 청소년용에서 모두 전 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이 .70 이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양육모용 .88, 청소년용 .88이었다.

2) 자아존중감 [청소년 응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가 있다. 역문항은 2번, 5번, 6번, 8번, 9번으로 총 5문항이다. 응답을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번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유의하지 않아 해당 문항을 제거하고 총 9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8번 문항인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정법 문항으로,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번안되며 번역의 오류가 발생한데다가 사회문화적 측면이 반영되지 못하여 해석 상 오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이자영 외, 2009). 나머지 9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50~.80 사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25)=66.15$, $p<.001$, RMSEA=.10[9], CFI=.95, TLI=.92, SRMR=.05).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본 연구에서 .90이었다.

3) 공격성 [청소년 응답]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붕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평정척도' 내 공격행동 하위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공격성 척도 6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를 들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공격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chi^2(9)=21.24$, $p<.05$, RMSEA=.09[10],

9),10) 자유도가 작아 RMSEA값이 나쁜 적합도를 보일 경우 CFI와 TLI를 기준으로 모형을 평가할 수 있다(홍세희, 2000).

CFI=.96, TLI=.93, SRMR=.04),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50~.76 사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붕환과 임경희(2003)의 연구에서 공격행동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으로 나타났다.

4) 우울 [양육모 응답]

양육모의 우울은 미국의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Radloff(1977)의 역학연구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번안한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CES-D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시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를 들 수 있다. '극히 드물다(1점)'에서 '대부분 그랬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모의 우울이 높다. 역문항은 5번, 10번, 15번이다.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우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 문항인 10번과 15번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CES-D에서 10번과 15번 문항이 삭제될 경우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높아진 결과와 유사하다(신서연, 2011). 나머지 18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55~.87 사이로 나타났다($\chi^2(133)=287.69$, $p<.001$, RMSEA=.08, CFI=.93, TLI=.92, SRMR=.05).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CES-D 한국어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이었다. 본 연구의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5이었다.

한편 본 연구문제 3번을 검증하는 모형에서 양육모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CES-D를 사용하였다[11]. 단축형

11) 이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5문항), 자아존중감(6문항), 공격성(6문항)과 양육모의 생활만족도(5문항), 우울(18문항)을 모두 함께 검증할 경우 사례 수(N=171)가 작아 분

CES-D는 CES-D와 약 .96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며, CES-D와 우울증 선별의 진단적 수행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에 따라 필요 시 CES-D를 대신하여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신서연, 2011). 단축형 CES-D에서도 15번 문항은 문항-총점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신서연, 2011),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축형 CES-D의 15번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나머지 9문항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54~.87 사이로 나타났다($\chi^2(27)=68.43$, $p<.001$, RMSEA=.10, CFI=.95, TLI=.94, SRMR=.04). 본 연구에서 단축형 CES-D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청소년, 양육모 응답]

청소년 인적사항으로 성별과 연령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의 보기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령을 알아보기 위해 출생연도를 질문하였으며, 연 나이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양육모 인적사항으로 연령과 학력을 사용하였다. 양육모의 출생연도를 질문하였으며, 연 나이를 계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모의 연령은 '① 40세 이하, ② 41세 이상 45세 이하, ③ 46세 이상 50세 이하, ④ 51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모형에서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양육모의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교(2~3년제) 졸업, ⑤ 대학교(4년제) 졸업, ⑥ 대학원 재학 이상'의 보기로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는 응답이 1명임에 따라 중학교 졸업의 응답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양육모의 학력은

석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름임

모형에서 연속변수로 간주하였다.

2) 이혼 후 기간 [양육모 응답]

이혼 후 기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참조하여 법적 이혼 연도를 양육모에게 질문하였다. 해당 연도를 조사년도인 2021년에서 뺀 연도를 계산하였으며, 응답에 기초하여 '① 5년 이하, ② 6년 이상 10년 이하, ③ 11년 이상 16년 이하, ④ 16년 이상 20년 이하'로 범주를 나누었다. 이혼 후 기간은 연속변수로 간주하고 모형에 투입하였다.

3)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청소년 응답]

청소년 자녀가 느끼는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은 현재 아버지와 친밀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은 '① 전혀 친밀하지 않음, ② 친밀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친밀한 편임, ⑤ 매우 친밀함'의 보기를 지니며, 연속변주로 간주하였다.

4) 이혼 부-모 간 관계 [청소년 응답]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이혼 부-모 간 관계는 '학생은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단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① 매우 나쁨, ② 나쁜 편임, ③ 보통, ④ 좋은 편임, ⑤ 매우 좋음'으로 구성되었다. 이혼 부-모 간 관계는 모형에서 연속변수로 취급하였다.

제 4 절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오차의 존재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신뢰로운 추정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복수의 매개변수 사용이 용이하고, 이론 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및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이전에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으며,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관찰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모형이 가정한 주요 변수 간 관계와 유의성을 검증하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자료에 결측값이 없음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셋째, 추가분석을 실시하면서 구조모형 관계에 대한 효과분해를 수행하였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원이 청소년과 양육모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효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를 검토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스트래핑을 10,000번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TATA 16.0과 Mplus 8.0을 활용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혼한 한부모가족 총 171쌍으로, 양육모 171명과 청소년 171명이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거주 지역의 경우, 인천광역시에 사는 참여자가 과반(54.97%)이었다. 경기도(23.98%)와 서울광역시(21.05%)의 거주자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양육모의 연령은 29세부터 55세 사이로, 평균은 43.7세(*SD*=5.89)였다. 구체적으로 양육모의 연령은 41세 이상 45세 이하(38.60%)가 가장 많았고, 40세 이하(26.32%), 46세 이상 50세 이하(22.22%), 51세 이상 55세 이하(12.87%)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절반가량(51.46%)이었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19.30%), 대학교 졸업(18.71%), 중학교 졸업 이하(7.02%), 대학원 졸업 이상(3.51%)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45.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5.73%)와, 200만원 이상(23.39%)의 범주가 많았다. 100만원 이하(5.26%)라는 응답도 소수 존재하였다. 전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은 1,675,313원(*SD*=741,158원)이었고,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의 범위는 최소 80만원부터 최대 700만원까지로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이혼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월 215.6만원이었는데(김은지 외, 2018), 본 연구대상인 한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표 4-1]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71)

			N (M)	% (*SD*)	min	max	왜도	첨도
지역		경기도	41	23.98				
		서울광역시	36	21.05				
		인천광역시	94	54.97				
양육모	연령	40세 이하	45	26.32	29	55		
		41세 이상 45세 이하	66	38.60				
		46세 이상 50세 이하	38	22.22				
		51세 이상 55세 이하	22	12.8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	7.02				
		고등학교 졸업	88	51.46				
		전문대(2~3년제) 졸업	33	19.30				
		대학교4년제) 졸업	32	18.71				
		대학원 졸업 이상	6	3.51				
	가구 소득 (단위: 만원)	100만원 이하	9	5.26	80	70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78	45.61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4	25.73				
		200만원 이상	40	23.39				
	이혼 후 기간	5년 이하	71	41.52	0	18		
		6년 이상 10년 이하	57	33.33				
		11년 이상 15년 이하	37	21.64				
		16년 이상 20년 이하	6	3.51				
	생활만족도 (1~5)		2.38	.83	1	5	.38	3.15
	우울 (1~4)		2.13	.73	1	3.83	.42	2.21
자녀	성별	남학생	83	48.54				
		여학생	88	51.46				
	연령	11세	29	16.96	11	19		
		12세	32	18.71				
		13세	18	10.53				
		14세	25	14.62				
		15세	22	12.87				
		16세	15	8.77				
		17세	12	7.02				
		18세	12	7.02				
		19세	6	3.51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1~5)		2.35	1.33	1	5		
	이혼 부-모 간 관계 (1~5)		2.16	1.07	1	5		
	생활만족도 (1~5)		3.49	.85	1	5	-.24	2.82
	공격성 (1~5)		2.39	.79	1	4.50	.35	2.55
	자아존중감 (1~5)		3.84	.74	1.89	5	-.29	2.65

이혼 후 기간은 5년 이하(41.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년 이상 10년 이하(33.33%), 11년 이상 15년 이하(21.64%), 16년 이상 20년 이하(3.51%) 순으로 많았다. 이혼 후 기간의 범위는 최소 0년부터 최대 18년까지였으며, 평균 7.29년(*SD*=4.18)이었다. 양육모의 생활만족도는 1-5점 범위에서 평균 2.38점(*SD*=.83)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2점(그렇지 않다)에 가까움에 따라 약간 낮았다. 우울의 경우 1-4점 범위에서 평균 2.13점(*SD*=.73)으로, 2점(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의 성별은 여학생(51.46%)이 남학생(48.54%)보다 약간 많았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98세(*SD*=2.35)이며, 11세부터 19세까지 모두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세(18.71%), 11세(16.96%), 14세(14.62%), 15세(12.87%), 13세(10.53%), 16세(8.77%), 17세(7.02%), 18세(7.02%), 19세(3.51%) 순으로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비양육부에 대한 청소년의 친밀감은 평균 2.35점(*SD*=1.33)으로, 3점(보통)보다 낮았으며 2점(친밀하지 않음)에 가깝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평균 2.16점(*SD*=1.07)으로, 2점(나쁜 편임)에 가까웠다. 이혼 부-모 간 관계의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1점(매우 나쁨)과 3점(보통) 사이에 주로 청소년의 응답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3.49점(*SD*=.85)으로, 3점(보통이다)과 4점(그런 편이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보통을 약간 상회하였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평균 2.39점(*SD*=.79)으로 2점(그렇지 않다)에 가까움에 따라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84점(*SD*=.74)으로 4점(그런 편이다)에 가까움에 따라, 보통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보인다.

연속형 종속변수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

.24~.42, 첨도의 경우 절대값이 2.21~3.15 수준으로 나타나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은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은 10을 넘지 않으면 단변량 정규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Kline, 2011).

[표 4-2] 면접교섭 및 양육비 이행 특성 (N=171)

			N (M)	% (*SD*)
면접교섭 (지난 6개월 간)	이행 여부	이행함	75	43.86
		안함	96	56.14
	정기성 (n=75)	정기적	21	28.00
		비정기적	54	72.00
	빈도 (n=75)	1번	16	21.33
		2번	17	22.67
		3번	6	8.00
		4번	6	8.00
		5번	7	9.33
		6번	2	2.67
		7번 이상	21	28.00
양육비 (지난 1년 간)	이행 여부	이행함	48	28.07
		안함	123	71.93
	정기성 (n=48)	정기적	33	68.75
		비정기적	15	31.25
	수령 금액 (n=48, 단위: 원)		522,083	300,989
이행유형	둘 다 이행		38	22.22
	면접교섭만 이행		37	21.64
	양육비만 이행		10	5.85
	둘 다 안함		86	50.29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56.14%)가 이행하는 경우(43.86%)보다 더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중에서 비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비율은 31.58%로, 정기적인 면접교섭(12.28%) 비율의 2.5배 이상이었다.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김은지 외, 2018)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비율은 9.5%,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나는 비율은 24.9%이다. 본 연구대상에는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지난 6개월 동안 면접교섭 횟수를 살펴보면 1개월에 1번 가량 만났음을 의미하는 '7번 이상'이 약 2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번(22.67%), 1번(21.33%), 5번(9.33%) 순으로 나타났다. 3번(8.00%)과 4번(8.00%)은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번(2.67%)이 가장 적었다. 면접교섭 빈도의 평균은 1.67(*SD*=2.46)로, 1번과 2번 만남의 사이값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비는 지난 1년 동안 받은 적 없다는 응답(71.93%)이 받았다는 응답(28.07%)보다 약 2.5배가량 많았다. 전체 한부모가족 중에서 자녀양육비를 받는 경우 정기적 지급(19.30%)이 비정기적 지급(8.77%)보다 많았다.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자녀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은 73.1%이며, 정기 지급은 15.2%이다(김은지 외, 2018).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간 월 평균 자녀양육비의 수령액은 약 522,083원이었다. 자녀양육비 수령액의 범위는 월 최저 1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분포하였다. 월 평균 자녀양육비 수령액은 50만원이란 응답(20.8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16.67%), 100만원(14.58%), 60만원(10.42%), 70만원(8.33%), 25만원(6.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외(2018)에 따르면 자녀양육비 수령액은 양육비 지급채권이 있는 경우 월 평균 56만원, 지급채권이 없는 경우 월 평균 39.3만원이었다. 본 조사 결과는 2018년 양육비 지급채권이 있는 한부모가 수령한 월 평균 자녀양육비 금액과 유

사하였다.

이행유형을 분류한 결과, 절반가량(50.29%)이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전부 이행되지 않는 집단이었다. 다음으로 면접교섭과 양육비가 모두 이행되는 집단(22.22%)과, 면접교섭만 이행되는 집단(21.64%)이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만 이행하는 집단(5.85%)도 적은 비율로 존재하였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양육부와 면접교섭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면접교섭 시 평균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 만나는 장소 및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경우, 비양육부와 1박 이상 함께 한다는 응답(32.00%)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시간 미만(28.0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18.67%),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13.33%), 6시간 이상 하루 미만(8.00%)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만나는 장소는 만날 때마다 다르다는 응답(25.33%)이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지목된 장소로는 아버지가 사는 집(24.00%)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현재 사는 집에서 만남(18.67%), 음식점(17.33%), 기타(14.67%)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은 중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면접교섭을 실시한 청소년의 대부분이 '식사하기'에 응답하였다. 이는 면접교섭이 이행된 경우의 약 75%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쇼핑하기'가 많았다. 아버지와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TV를 시청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노래방/PC방에 간다고 응답한 경우 '함께 놀기'로 분류하였다.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대화한다는 응답도 있었으며, 과제나 공부를 같이 한다는 응답은 드물었다. 기타 범주에는 친척집에 가거나,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있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4-3] 면접교섭 이행에 대한 세부정보 (N=75)

		n	%
함께 보내는 시간	2시간 미만	21	28.00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14	18.67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0	13.33
	6시간 이상~하루 미만	6	8.00
	1박 이상	24	32.00
만나는 장소	현재 사는 집	14	18.67
	아버지가 사는 집	18	24.00
	음식점	13	17.33
	만날 때마다 다름	19	25.33
	기타	11	14.67
주로 함께 하는 활동 (복수 응답)	식사하기	56	
	쇼핑하기	21	
	함께 놀기*	15	
	고민을 이야기함/대화	13	
	과제/공부를 같이 함	3	
	기타	9	

*영화보기(n=7), Game하기(n=4), TV시청(n=3), 놀이공원(n=2), 노래방(n=1) 복수 응답

2. 주요 변수에 대한 차이 검정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난 6개월 동안의 면접교섭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표 4-4] 참조). χ^2 분석 결과, 이혼 후 기간에 따라 면접교섭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9.37, p<.001). 이혼 후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비양육부를 만난 비율은 다른 구간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혼 후 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 11년 이상 15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인 경우에 비양육부와 만나지 않은 비율은 평균보다 각각 12.28%p, 24.94%p, 10.53%p 더 높았다. 청소년 자녀의 성별, 연령과 양육모의 연령,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른 면접교섭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비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χ^2 분석 결과,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비 수령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3.18, p<.001).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양육비 수령 여부와, 응답 당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질문하였으므로 양육비 수령 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양육비 수령이 있었던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한 비율(57.50%)이 과반이었다.

또한 이혼후 기간에 따라 양육비 수령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9.31, p<.05). 이혼후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양육비를 수령한 비율이 평균보다 11.37%p 가량 더 높았다. 다른 이혼후 기간 구간들은 모두 양육비를 수령하지 못한 비율이 75% 이상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양육비를 수령한 48가족 중 절반 이상(58.33%)이 이혼후 기간이 5년 이하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수령 여부에 청소년 자녀의 성별, 연령 및 양육모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양육부의 이행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χ^2 분석 결과, 가구소득에 따른 이행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7.32, p<.01).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모두 이행한 경우 및 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한 비율은 각각 42.50%, 15.00%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전 구간에서 과반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혼후 기간에 따른 비양육부의 이행유형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2=33.13, p<.001). 이혼후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모두 이행한 비율은 32.21%로, 평균보다 약 10%p 더 높았다. 반대로 비양육부가 둘 다 이행하지 않은 비율은 28.17%로, 평균보다 약 22.12%p 낮았다. 이혼후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비율은 63% 이상으로 높았다.

[표 4-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면접교섭 여부의 차이 단위: 명(%)

내용	구분	면접교섭		계	χ^2
		만남	만나지 않음		
청소년 자녀 성별	여학생	37 (42.05)	51 (57.95)	88 (100.00)	.24
	남학생	38 (45.78)	45 (54.22)	83 (100.00)	
청소년 자녀 연령	11-13세	31 (39.24)	48 (60.76)	79 (100.00)	2.38
	14-16세	32 (51.61)	30 (48.39)	62 (100.00)	
	17-19세	12 (40.00)	18 (60.00)	30 (100.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3 (33.33)	6 (66.67)	9 (100.00)	4.3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0 (38.46)	48 (61.54)	78 (10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 (43.18)	25 (56.82)	44 (100.00)	
	200만원 이상	23 (57.50)	17 (42.50)	40 (100.00)	
이혼후 기간	5년 이하	48 (67.61)	23 (32.39)	71 (100.00)	29.37***
	6년 이상 10년 이하	18 (31.58)	39 (68.42)	57 (100.00)	
	11년 이상 15년 이하	7 (18.92)	30 (81.08)	37 (100.00)	
	16년 이상 20년 이하	2 (33.33)	4 (66.67)	6 (100.00)	
양육모 연령	40세 이하	18 (40.00)	27 (60.00)	45 (100.00)	2.59
	41세 이상 45세 이하	27 (40.91)	39 (59.09)	66 (100.00)	
	46세 이상 50세 이하	17 (44.74)	21 (55.26)	38 (100.00)	
	51세 이상 55세 이하	13 (59.09)	9 (40.91)	22 (100.00)	
양육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33.33)	8 (66.67)	12 (100.00)	2.44
	고등학교 졸업	37 (42.05)	51 (57.95)	88 (100.00)	
	전문대(2~3년제) 졸업	14 (42.42)	19 (57.58)	33 (100.00)	
	대학교 (4년제) 졸업	16 (50.00)	16 (50.00)	32 (100.00)	
	대학원 졸업 이상	4 (66.67)	2 (33.33)	6 (100.00)	
전체		75 (43.86)	96 (56.14)	171 (100.00)	

***$p<.001$

[표 4-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비 수령 여부의 차이 단위: 명(%)

내용	구분	양육비지원		계	χ^2
		있음	없음		
청소년 자녀 성별	여학생	22 (25.00)	66 (75.00)	88 (100.00)	.85
	남학생	26 (31.33)	57 (68.67)	83 (100.00)	
청소년 자녀 연령	11-13세	23 (29.11)	56 (70.89)	79 (100.00)	.41
	14-16세	18 (29.03)	44 (70.97)	62 (100.00)	
	17-19세	7 (23.33)	23 (76.67)	30 (100.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1 (11.11)	8 (88.89)	9 (100.00)	23.1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7 (21.79)	61 (78.21)	78 (10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 (15.91)	37 (84.09)	44 (100.00)	
	200만원 이상	23 (57.50)	17 (42.50)	40 (100.00)	
이혼후 기간	5년 이하	28 (39.44)	43 (60.56)	71 (100.00)	9.31*
	6년 이상 10년 이하	11 (19.30)	46 (80.70)	57 (100.00)	
	11년 이상 15년 이하	9 (24.32)	28 (75.68)	37 (100.00)	
	16년 이상 20년 이하	0 (.00)	6 (100.00)	6 (100.00)	
양육모 연령	40세 이하	12 (26.67)	33 (73.33)	45 (100.00)	3.00
	41세 이상 45세 이하	21 (31.82)	45 (68.18)	66 (100.00)	
	46세 이상 50세 이하	7 (18.42)	31 (81.58)	38 (100.00)	
	51세 이상 55세 이하	8 (36.36)	14 (63.64)	22 (100.00)	
양육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25.00)	9 (75.00)	12 (100.00)	6.66
	고등학교 졸업	18 (20.45)	70 (79.55)	88 (100.00)	
	전문대(2~3년제) 졸업	14 (42.42)	19 (57.58)	33 (100.00)	
	대학교 (4년제) 졸업	11 (34.37)	21 (65.63)	32 (100.00)	
	대학원 졸업 이상	2 (33.33)	4 (66.67)	6 (100.00)	
전체		48 (28.07)	123 (71.93)	171 (100.00)	

*p<.05 ***p<.001

[표 4-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행유형의 차이 단위: 명(%)

내용	구분	이행유형				계	χ^2
		둘 다	면접교섭만	양육비만	안함		
청소년 자녀 성별	여학생	18 (20.45)	19 (21.59)	4 (4.55)	47 (53.41)	88 (100.00)	1.13
	남학생	20 (24.10)	18 (21.69)	6 (7.23)	39 (46.99)	83 (100.00)	
청소년 자녀 연령	11-13세	19 (24.05)	12 (15.19)	4 (5.06)	44 (55.70)	79 (100.00)	5.19
	14-16세	14 (22.58)	18 (29.03)	4 (6.45)	26 (41.94)	62 (100.00)	
	17-19세	5 (16.67)	6 (23.33)	2 (6.67)	16 (53.33)	30 (100.00)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 (11.11)	2 (22.22)	0 (.00)	6 (66.67)	9 (100.00)	27.32**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 (19.23)	15 (19.23)	2 (2.56)	46 (58.97)	78 (100.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11.36)	14 (31.82)	2 (4.55)	23 (52.27)	44 (100.00)	
	200만원 이상	17 (42.50)	6 (15.00)	6 (15.00)	11 (27.50)	40 (100.00)	
이혼후 기간	5년 이하	25 (35.21)	23 (32.39)	3 (4.23)	20 (28.17)	71 (100.00)	33.13***
	6년 이상 10년 이하	8 (14.04)	10 (17.54)	3 (5.26)	36 (63.16)	57 (100.00)	
	11년 이상 15년 이하	5 (13.51)	2 (5.41)	4 (10.81)	26 (70.27)	37 (100.00)	
	16년 이상 20년 이하	0 (.00)	2 (33.33)	0 (.00)	4 (66.67)	6 (100.00)	
양육모 연령	40세 이하	9 (20.00)	9 (20.00)	3 (6.67)	24 (53.33)	45 (100.00)	12.60
	41세 이상 45세 이하	18 (27.27)	9 (13.64)	3 (4.55)	26 (54.55)	66 (100.00)	
	46세 이상 50세 이하	6 (15.79)	11 (28.95)	1 (2.63)	20 (52.63)	38 (100.00)	
	51세 이상 55세 이하	5 (22.73)	8 (36.36)	3 (13.64)	6 (27.27)	22 (100.00)	
양육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16.67)	2 (16.67)	1 (8.33)	7 (58.33)	12 (100.00)	12.81
	고등학교 졸업	15 (17.05)	22 (25.00)	3 (3.41)	48 (54.55)	88 (100.00)	
	전문대(2~3년제) 졸업	9 (27.27)	5 (15.15)	5 (15.15)	14 (42.42)	33 (100.00)	
	대학교 (4년제) 졸업	10 (31.25)	6 (18.75)	1 (3.13)	15 (46.88)	32 (100.00)	
	대학원 졸업 이상	2 (33.33)	2 (33.33)	0 (.00)	2 (33.33)	6 (100.00)	
전체		38 (22.22)	37 (21.64)	10 (5.85)	86 (50.29)	171 (100.00)	

**p<.01 ***p<.001

2) 면접교섭 및 양육비 이행 여부 및 정기성에 따른 차이 분석

지난 6개월 동안 면접교섭 이행의 여부, 정기성, 빈도 및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이행의 여부, 정기성, 수령 금액, 그리고 비양육부의 이행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표 4-7] 참조). 분석 결과, 면접교섭의 이행 여부, 정기성과 빈도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양육부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점수는 2.19점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점수인 2.47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2.12, $p<.05$). 유사하게 양육비 이행의 정기성 부분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이행하는 경우(2.12점), 비정기적으로 이행하는 경우(2.34점), 이행하지 않는 경우(2.47점) 순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았다($F=2.69$, $p<.10$). 양육비 수령 금액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행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비양육부가 양육비만 이행한 경우(1.73점),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둘 다 이행한 경우(2.31점), 면접교섭만 이행한 경우(2.41점), 면접교섭과 양육비 둘 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2.50점) 순으로 낮았다($F=3.80$, $p<.05$).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비양육부가 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점수 1.73점과, 면접교섭과 양육비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점수 2.50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7]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N=171)

			n	생활만족도			공격성			자아존중감		
				M	SD	t / F	M	SD	t / F	M	SD	t / F
면접교섭	여부	이행함	75	3.50	.84	−.13	2.36	.79	.51	3.81	.76	.48
		이행 안함	96	3.48	.85		2.42	.79		3.86	.73	
	정기성	정기적	21	3.56	.97	.09	2.40	.84	.19	3.75	.98	.19
		비정기적	54	3.47	.80		2.34	.78		3.83	.67	
		이행 안함	96	3.48	.85		2.42	.79		3.86	.73	
	빈도	월1회 이상	23	3.33	1.05	.66	2.49	.86	.63	3.81	.98	.12
		월1회 미만	52	3.57	.73		2.29	.76		3.81	.66	
		이행 안함	96	3.48	.85		2.42	.79		3.86	.73	
양육비	여부	이행함	48	3.49	.82	.01	2.19	.78	2.12*	3.96	.70	−1.39
		이행 안함	123	3.49	.86		2.47	.79		3.79	.75	
	정기성	정기적	33	3.57	.79	.50	2.12	.78	2.69†	3.90	.72	1.25
		비정기적	15	3.31	.88		2.34	.77		4.08	.67	
		이행 안함	123	3.49	.86		2.47	.79		3.79	.75	
	수령 금액	평균 이상	17	3.53	.98	.03	2.22	.83	2.25	4.14	.72	1.71
		평균 미만	31	3.46	.72		2.17	.76		3.87	.69	
		이행 안함	123	3.49	.86		2.47	.79		3.79	.75	
이행 유형	둘 다 이행		38	3.42	.80	.57	2.31	.80	3.80*	3.92	.74	1.17
	면접교섭만 이행		37	3.58	.89		2.41	.79		3.69	.78	
	양육비만 이행		10	3.74	.87		1.73	$.45_a$		4.13	.53	
	둘 다 안함		86	3.45	.85		2.50	$.79_b$		3.83	.74	
전체			171	3.49	.85		2.39	.79		3.84	.74	

† $p < .10$, * $p < .05$

면접교섭 이행의 여부, 정기성, 빈도 및 양육비 이행의 여부, 정기성, 수령 금액, 그리고 비양육부의 이행유형에 따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8]과 같다. 청소년 자녀와 달리 양육비 이행의 여부, 정기성, 수령 금액과 비양육부의 이행유형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다.

반면 면접교섭의 이행 유무에 따라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경우 양육모의 생활만족도는 2.55점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점수인 2.2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37, $p<.05$). 구체적으로 면접교섭이 비정기적으로 이행된 경우(2.56점)와 이행되지 않은 경우(2.25점) 간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F=2.80$, $p<.10$). 면접교섭의 빈도에 따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는 월 1회 이상 이행된 경우(2.64점), 월 1회 미만 이행된 경우(2.51점), 이행 안한 경우(2.25점) 순으로 높았다($F=3.01$, $p<.10$).

[표 4-8]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요인에 따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차이 (N=171)

			n	생활만족도			우울		
				M	SD	t / F	M	SD	t / F
면접교섭	여부	이행함	75	2.55	.82	−2.37*	2.08	.73	.82
		이행 안함	96	2.25	.81		2.17	.73	
	정기성	정기적	21	2.53	1.10	2.80†	2.32	.75	2.01
		비정기적	54	2.56	.69		1.98	.70	
		이행 안함	96	2.25	.81		2.17	.73	
	빈도	월1회 이상	23	2.64	.92	3.01†	2.15	.80	.52
		월1회 미만	52	2.51	.78		2.04	.70	
		이행 안함	96	2.25	.81		2.17	.73	
양육비	여부	이행함	48	2.53	.85	−1.39	2.10	.71	.37
		이행 안함	123	2.33	.81		2.14	.74	
	정기성	정기적	33	2.52	.95	.96	2.12	.70	.12
		비정기적	15	2.53	.59		2.04	.75	
		이행 안함	123	2.33	.81		2.14	.74	
	수령 금액	평균 이상	17	2.71	.93	1.60	1.96	.63	.50
		평균 미만	31	2.43	.80		2.17	.75	
		이행 안함	123	2.33	.81		2.14	.74	
이행 유형	둘 다 이행		38	2.57	.94	1.93	2.09	.76	.25
	면접교섭만 이행		37	2.54	.69		2.06	.71	
	양육비만 이행		10	2.36	.34		2.11	.51	
	둘 다 안함		86	2.24	.85		2.18	.75	
전체			171	2.38	.83		2.13	.73	

† $p < .10$, * $p < .05$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이전에 연구 모형에 투입될 변수 간 다중공선성과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내생변수인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분산팽창계수는 최소 1.07부터 최대 2.08까지로 나타났으며, 10을 넘지 않음에 따라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표 4-9]에 제시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외생변수인 면접교섭 여부와 양육비 지원 여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4, p<.001). 면접교섭의 이행은 청소년 자녀의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r=.59, p<.001) 및 이혼 부-모 간 관계(r=.27,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면접교섭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다(r=.18, p<.05). 그리고 이혼후 기간과는 부적으로 연관된 반면(r=-.38, p<.001), 가구소득과는 정적으로 연관되었다(r=.15, p<.05).

양육비 지원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부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16, p<.05). 면접교섭의 이행과 유사하게 양육비 지원은 청소년 자녀의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r=.34, p<.001). 양육비 지원은 이혼후 기간과 부적으로 연관되었으며(r=-.20, p<.01), 가구소득과는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r=.29, p<.001).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부적으로 연관된 반면(r=-.43, p<.001), 자아존중감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r=.63, p<.001).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은 부적으로 연관되었다(r=-.50, p<.001).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r=-.27, p<.001)와 자아존중감(r=-.25, p<.01) 유의하게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또한 양육모의 연령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r=-.19, p<.05)와 자아존중감(r=-.18, p<.05)에 모두 부적으로 연관된 반면, 공격성(r=.19, p<.05)에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r=-.64, p<.001). 양육모의 생활만족도는 청소년 자녀의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r=.24, p<.01)과, 자녀가 지각한 이혼 부-모 간 관계(r=.16, p<.05)와 모두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양육모의 우울은 이혼후 기간과 부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17, p<.05). 한편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r=.22, p<.01), 양육모의 우울과는 부적으로(r=-.16, p<.05)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이외에도 청소년 자녀의 연령은 양육모의 연령(r=.42, p<.001) 및 이혼후 기간(r=.28, p<.001)과 모두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은 이혼 부-모 간 관계와 정적으로 연관된 반면(r=.48, p<.001), 이혼후 기간과 유의하게 부적으로 연관되었다(r=-.32, p<.001). 양육모의 학력은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36,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주요 내생변수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자아존중감 간 상관관계 및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 모형에서 내생변수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연관된 청소년 자녀의 연령, 양육모의 연령과 이혼 부-모 간 관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r=.13, p<.10)을 나타냄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이 통상적 기준보다 높다. 그러나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해당 변수가 내생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통제하였다. 더불어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원은 이혼 부-모 간 관계가 좋을수록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수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혼 부-모 간 관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12)]

---

12)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면접교섭은 지난 6개월 동안 이행 여부를, 자녀양육비 지원은 지난 1년 동안 이행 여부를, 이혼 부-모 간 관계는 현재 상태를 질문하였음. 그러나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함에 따

양육모 모형에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생변수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하게 연관된 비양육부에 대한 자녀의 친밀감, 이혼 부-모 간 관계, 양육모의 학력, 이혼후 기간을 통제하였다. 양육모의 학력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r=.14, p<.10) 및 우울(r=-.14, p<.10)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통상적 기준보다 유의수준이 높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하였다.

라 과거의 이혼 부-모 간 관계를 반영하는 대리 변수로 사용함

[표 4-9]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면접 교섭	양육비 지원	청소년							양육모				이혼후 기간	가구 소득
				생활 만족도	공격성	자아 존중감	성별	연령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이혼부-모 관계	생활 만족도	우울	연령	학력		
면접 교섭		1														
양육비 지원		.44***	1													
청소년	생활 만족도	.01	-.00	1												
	공격성	-.04	-.16*	**-.43*** **	1											
	자아 존중감	-.04	.11	**.63*** **	**-.50*** **	1										
	성별	.04	.07	.02	-.12	.11	1									
	연령	.04	.02	**-.27*** **	.06	**-.25** **	.03	1								
	친밀감	.59***	.34***	.10	-.04	.12	-.01	-.08	1							
	이혼부-모 관계	.27**	.15†	**.13† **	-.06	.06	.00	-.10	.48***	1						
양육모	생활 만족도	.18*	.11	.22**	-.13†	.13†	.03	.03	**.24** **	**.16* **	1					
	우울	-.06	-.03	-.16*	.08	-.12	-.00	-.00	-.06	**-.14† **	**-.64*** **	1				
	연령	.11	.01	**-.19* **	**.19* **	**-.18* **	.02	.42***	.01	.02	-.05	.09	1			
	학력	.10	.14†	-.07	-.07	.05	-.03	.05	.05	-.03	**.14† **	**-.14† **	.07	1		
이혼후 기간		-.38***	-.20**	.01	-.04	.02	-.07	.28***	-.32***	-.08	.01	**-.17* **	.14†	-.09	1	
가구소득		.15*	.29***	-.03	-.11	.03	-.13†	.06	.15†	-.02	.13	-.04	.09	.36***	-.08	1

† $p<.10$ * $p<.05$ ** $p<.01$ *** $p<.001$

*음영 부분은 본 연구 내생변수 간 상관관계를, 굵은 글씨는 각각 자녀 및 양육모 모형의 통제변수의 근거가 되는 상관관계를 가리킴

제 2절.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는 각 연구문제별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각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 요인적재값 수준을 확인하였고, 잠재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본 다음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가설적 경로를 포함하는 구조모형 검증을 통하여 각 잠재변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료에 결측값이 없음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최대우도법(ML)을 활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검정, RMSEA, CFI, TLI와 SRMR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통계적 검정인 χ^2 검정은 모형이 통계적으로 자료에 부합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홍세희, 2000). 그러나 χ^2 값은 과도하게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표본의 크기, 측정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 및 다변량 정규성에 영향을 받는 등 여러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이다(김수영, 2016; Kline, R. B., 2016).

이에 χ^2 검정과 함께 RMSEA, CFI, TLI와 SRMR과 같은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하여 모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수영, 2016; 홍세희, 2000). 모형의 근사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도록 고안된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연구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로, 적합도가 좋을수록 0에, 좋지 않을수록 1에 가깝다(김수영, 2016). RMSEA는 .05 이하이면 좋고, .05~.08 이하인 경우 괜찮은 적합도로 평가된다(Browne & Cudeck, 1993).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대표적인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기저모형(base model)에 비교하여 연구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 보여준다(홍세희, 2000). TLI는 연구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만 값이 1을 초과할 수 있는데 비해, CFI 값은 0에서

1 사이 값을 지니도록 표준화되었고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김수영, 2016; 홍세희, 2000; Kline, R. B., 2016). CFI와 TLI는 .90 이상인 경우 좋은 모형으로 간주된다(유치선, 강현철, 2020).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공분산잔차의 절대값의 평균을 표준화한 지수이며 값이 커질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Kline, R. B., 2016). SRMR은 .08 이하면 좋다고 간주된다(김수영, 2016; Hu & Bentler, 1999).

1.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1-1. 측정모형 검증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대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한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는 [표 4-10]에 제시하였다. χ^2 값은 309.55(df=165, p<.001)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과, RMSEA는 .07, CFI는 .91, TLI는 .90, SRMR은 .07이었다. 전반적으로 측정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잠재변수 중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인 3번 문항과 5번 문항 및 5번 문항과 10번 문항[13]의 측정오차들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표 4-10] 청소년 자녀 측정모형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309.55 (165)	<.001	.07	.91	.90	.07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대한 요인적재값은 [표 4-11]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변수 중 8번 문항은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다른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모두 기준치 .05 이상이었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상관계수는 .80 이하였다([표 4-12] 참조). 이를 통하여 잠재변수 간 충분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3) 3번: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5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역채점).
10번: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림 4-1] 청소년 자녀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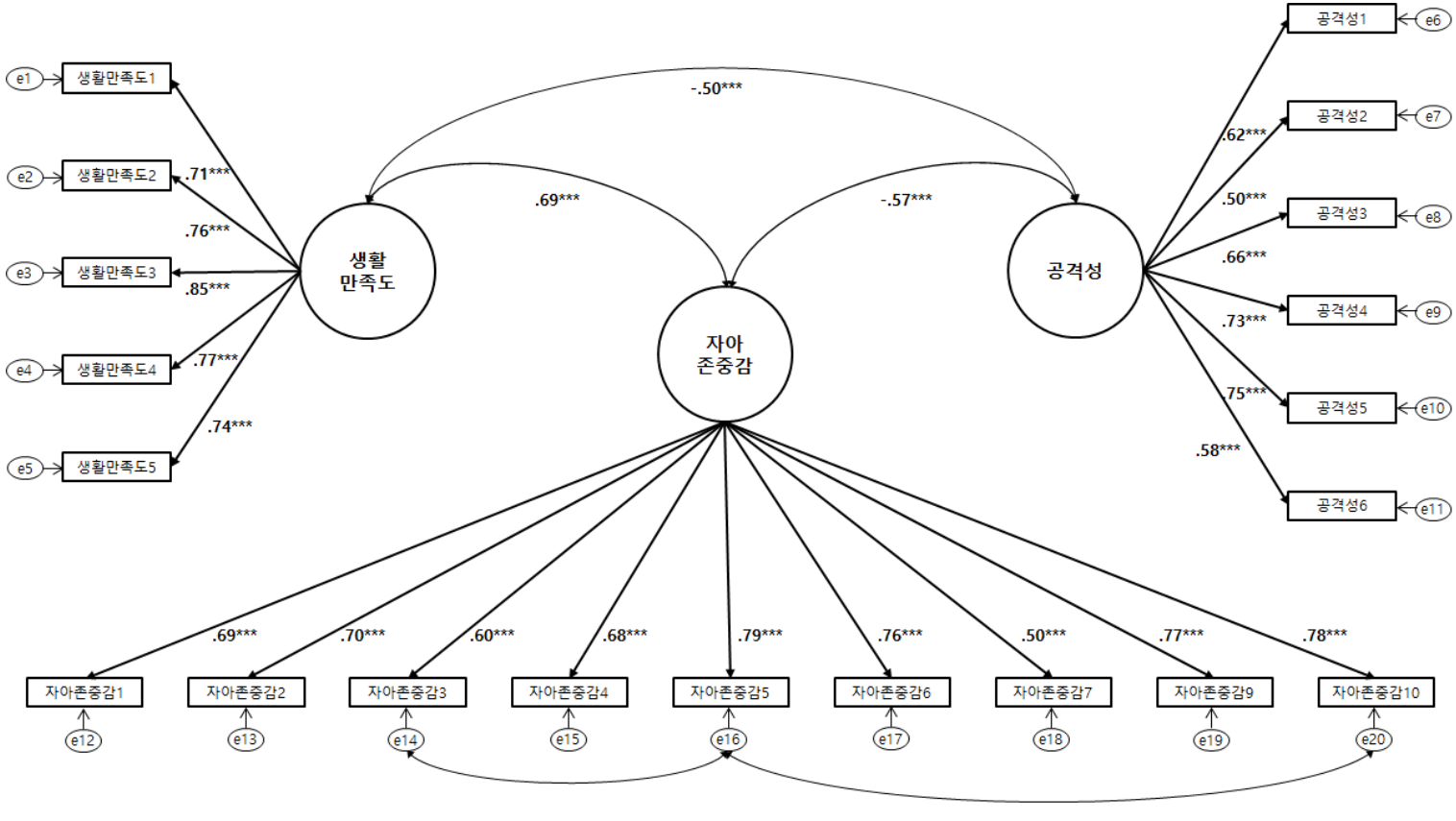

$^{***}p<.001$

[표 4-11] 청소년 자녀 측정모형 요인적재값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1	.71***	1		
	생활만족도2	.76***	1.14	.12	9.22
	생활만족도3	.85***	1.28	.12	10.42
	생활만족도4	.77***	1.08	.12	9.40
	생활만족도5	.74***	1.34	.15	8.87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69***	1		
	자아존중감2	.70***	1.14	.14	8.40
	자아존중감3	.60***	.89	.12	7.33
	자아존중감4	.68***	.88	.11	8.23
	자아존중감5	.79***	1.18	.13	9.31
	자아존중감6	.76***	1.22	.13	9.12
	자아존중감7	.50***	.62	.10	6.15
	자아존중감9	.77***	1.19	.13	9.21
	자아존중감10	.78***	1.00	.11	9.17
공격성	공격성1	.62***	1		
	공격성2	.50***	.75	.14	5.54
	공격성3	.66***	1.10	.16	6.86
	공격성4	.73***	1.24	.16	7.54
	공격성5	.75***	1.44	.20	7.21
	공격성6	.58***	1.01	.18	5.79

$^{***}p<.001$

[표 4-12] 청소년 자녀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상관계수	공분산	표준오차	C.R.
생활만족도 ↔ 자아존중감	.69***	.32	.06	5.40
자아존중감 ↔ 공격성	-.57***	-.26	.06	-4.64
생활만족도 ↔ 공격성	-.50***	-.22	.05	-4.33

$^{***}p<.001$

1-2. 구조모형 검증

1)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의 효과

연구문제 1-1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4-2]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4-2]를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연령, 이혼 부-모 간 관계와 양육모의 연령은 모든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4-13]에 제시하였다. χ^2 값은 401.33(df=250, p<.001)으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과, RMSEA는 .06, CFI는 .91, TLI는 .90, SRMR은 .07이었다. 이에 본 구조모형은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표 4-13]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401.33 (250)	<.001	.06	.91	.90	.07

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에 대한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14]에서 변수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4-14] 참조),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면접교섭이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자녀양육비가 미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었던 경우 지원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β=.17, p<.05), 공격성은 낮았다(β=-.18, p<.05). 자녀양육비는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외에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의 매개효과, 가구소득의 매개효과, 이혼 부-모 간 관계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음. 각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 결과에 포함하지 않음. 각 결과는 [부록 2-1], [부록 2-2], [부록 2-3]에 제시함

[그림 4-2]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 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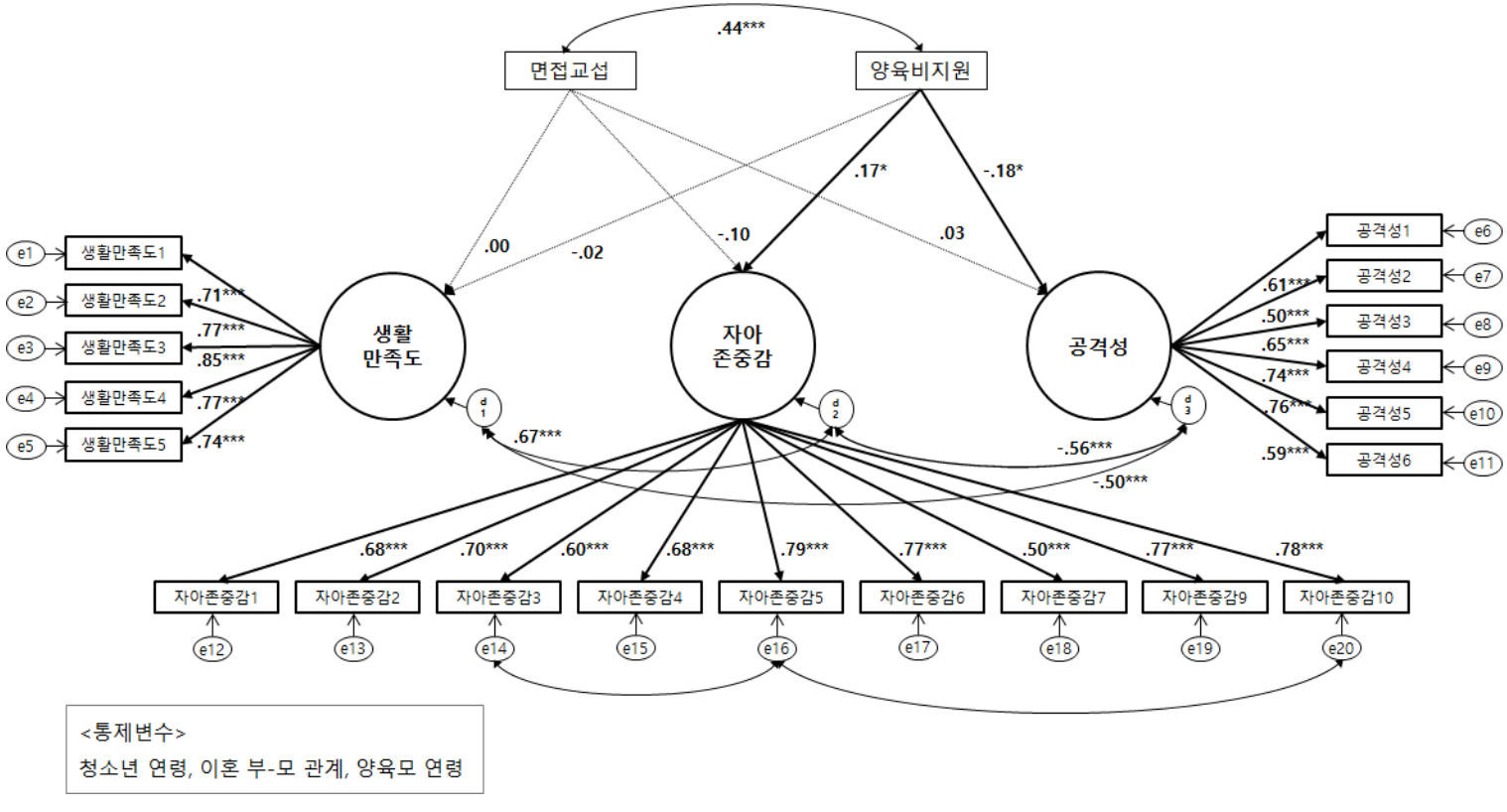

*p<.05 ***p<.001

[표 4-14]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면접교섭 → 자아존중감	-.10	-.14	.12	-1.13
면접교섭 → 공격성	.03	.04	.12	.30
면접교섭 → 생활만족도	.00	.00	.12	.03
양육비지원 → 자아존중감	.17*	.25	.13	1.92
양육비지원 → 공격성	-.18*	-.27	.13	-1.98
양육비지원 → 생활만족도	-.02	-.04	.13	-.27

*p<.05

통제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4-15]와 같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β=-.22, p<.01)과, 생활만족도(β=-.21, p<.05)가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양육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β=.23, p<.05)이 높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15]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통제변수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청소년 연령 → 자아존중감	-.22**	-.06	.03	-2.51
청소년 연령 → 공격성	-.04	-.01	.03	-.41
청소년 연령 → 생활만족도	-.21*	-.06	.03	-2.37
이혼 부-모 간 관계 → 자아존중감	.03	.02	.05	.43
이혼 부-모 간 관계 → 공격성	-.06	-.04	.05	-.74
이혼 부-모 간 관계 → 생활만족도	.12	.08	.05	1.44
양육모 연령 → 자아존중감	-.10	-.07	.06	-1.15
양육모 연령 → 공격성	.23*	.15	.06	2.42
양육모 연령 → 생활만족도	-.11	-.07	.06	-1.21

*p<.05 **p<.01

2) 비양육부의 이행유형의 효과

연구문제 1-2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3]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4-3]을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연령, 이혼 부-모 간 관계와 양육모의 연령은 모든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이행유형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4-16]에 제시하였다. χ^2 값은 414.00(df=267, p<.001)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과, RMSEA는 .06, CFI는 .91, TLI는 .90, SRMR은 .06이었다.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본 이행유형 구조모형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표 4-16]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이행유형)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414.00 (267)	<.001	.06	.91	.90	.06

이행유형 구조모형에서 변수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준거집단은 면접교섭만 이행하는 집단[15]이다. 비양육부가 면접교섭만 이행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양육비만 이행하는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은 유의하게 낮았다(β=-.22, p<.05). 면접교섭만 이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모두 이행하거나, 전부 안하는 경우 청소년의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5) 준거집단을 '둘 다 안함'으로 검증한 결과,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을 둘 다 안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았음(β=-.26, p<.01). 다른 유의한 결과는 없었으며, 모형적합도는 [표 4-16]과 동일했음

[그림 4-3]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 이행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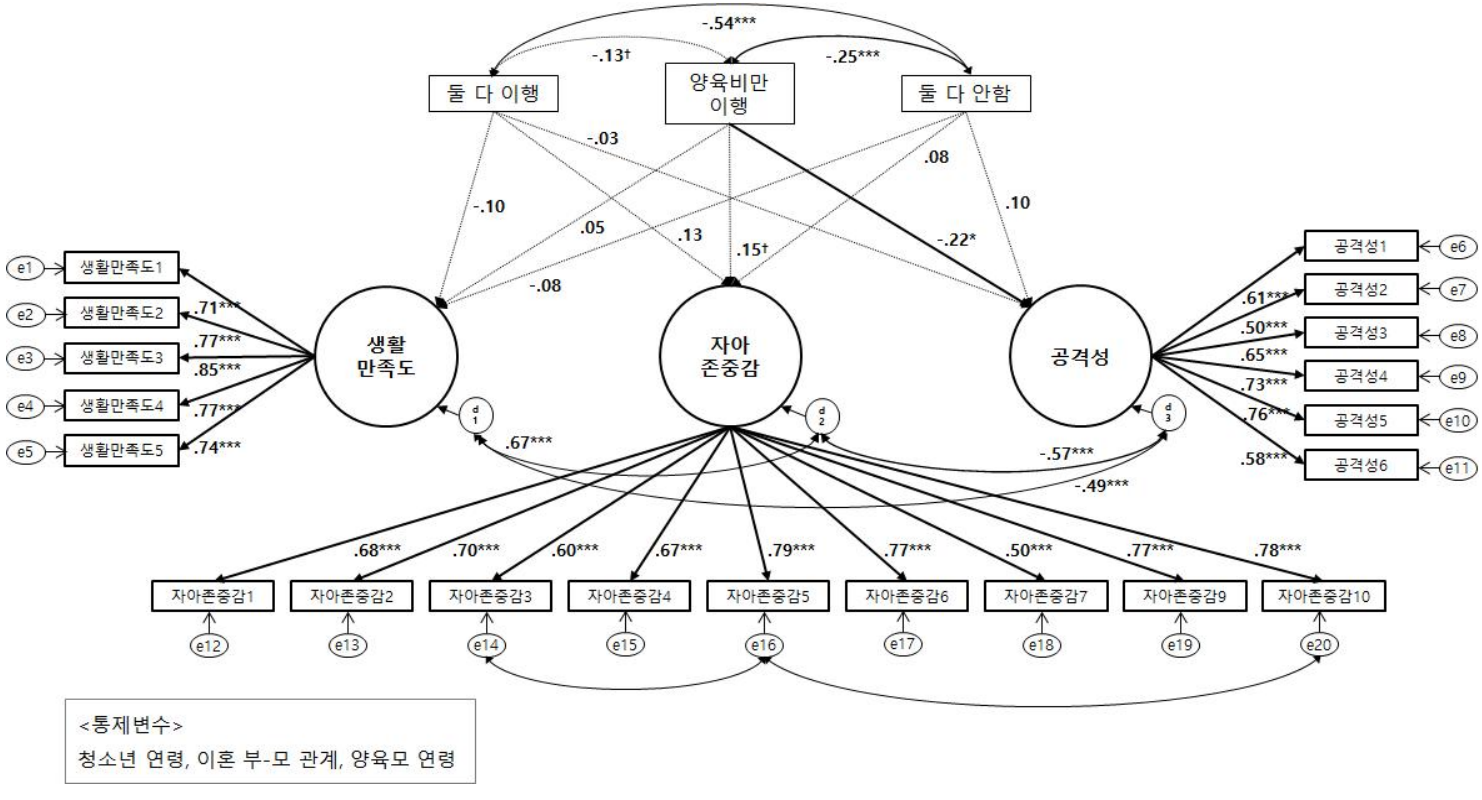

†p<.10 *p<.05 ***p<.001

*준거집단: 면접교섭만 이행

*둘 다 이행(면접교섭과 양육비 모두 이행), 둘 다 안함(면접교섭과 양육비 전부 안함)

[표 4-17]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이행유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둘 다 이행 → 자아존중감	.13	.22	.16	1.35
둘 다 이행 → 공격성	-.03	-.05	.16	-.28
둘 다 이행 → 생활만족도	-.10	-.16	.16	-1.03
양육비만 이행 → 자아존중감	.15†	.44	.25	1.79
양육비만 이행 → 공격성	-.22*	-.60	.25	-2.37
양육비만 이행 → 생활만족도	.05	.13	.25	.54
둘 다 안함 → 자아존중감	.08	.11	.14	.78
둘 다 안함 → 공격성	.10	.13	.14	.93
둘 다 안함 → 생활만족도	-.08	-.10	.14	-.73

†p<.10 *p<.05

통제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4-18]과 같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β=-.22, p<.01)과, 생활만족도(β=-.21, p<.05)가 유의하게 낮았다. 양육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β=.25, p<.01)이 높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표 4-18]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이행유형) 통제변수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청소년 연령 → 자아존중감	-.22**	-.06	.03	-2.52
청소년 연령 → 공격성	-.03	-.01	.03	-.38
청소년 연령 → 생활만족도	-.21*	-.06	.03	-2.40
이혼 부-모 간 관계 → 자아존중감	.03	.02	.05	.40
이혼 부-모 간 관계 → 공격성	-.05	-.03	.05	-.58
이혼 부-모 간 관계 → 생활만족도	.11	.07	.05	1.35
양육모 연령 → 자아존중감	-.10	-.07	.06	-1.19
양육모 연령 → 공격성	.25**	.17	.06	2.67
양육모 연령 → 생활만족도	-.12	-.08	.06	-1.36

*p<.05 **p<.01

2.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1-1. 측정모형 검증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대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한 결과는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χ^2 값은 402.55(df=227, p<.001)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과, RMSEA는 .07, CFI는 .93, TLI는 .93, SRMR은 .05로 측정모형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두 잠재변수 중 우울의 측정변수인 16번 문항과 19번 문항, 17번 문항과 18번 문항[16]의 측정오차들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표 4-19] 양육모 측정모형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402.55 (227)	<.001	.07	.93	.93	.05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대한 요인적재값은 [표 4-20]에 제시하였다. 우울의 측정변수 중 10번 및 15번 문항은 요인적재값이 .05 미만임에 따라 제외하였다. 이외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모두 기준치 .05 이상이었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80 이하였으며, 상관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표 4-21] 참조).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6) 16번: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9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7번: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8번: 마음이 슬펐다.

[그림 4-4] 양육모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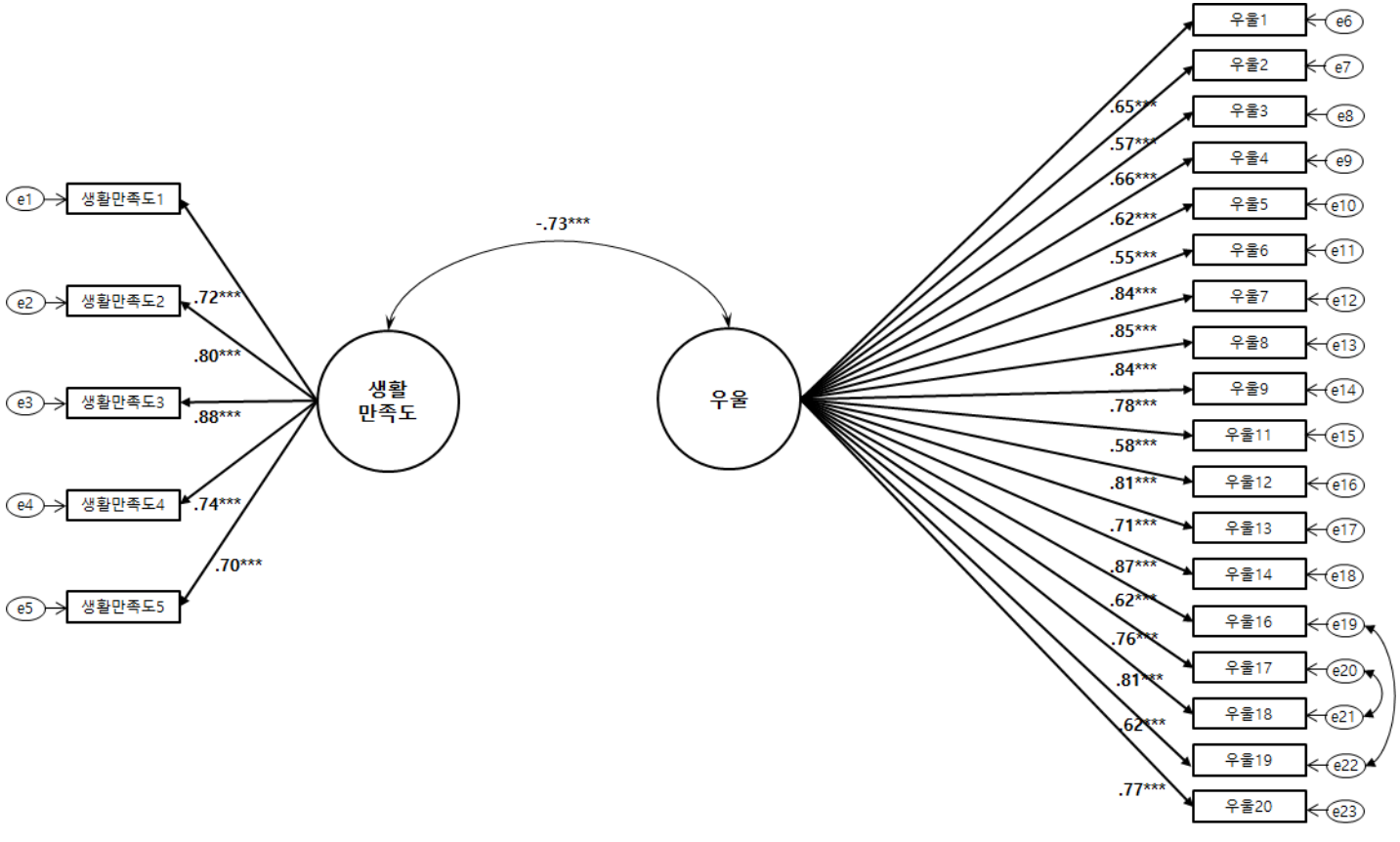

$^{***}p<.001$

[표 4-20] 양육모 측정모형 요인적재값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1	.72***	1		
	생활만족도2	.80***	1.09	.11	9.92
	생활만족도3	.88***	1.25	.12	10.74
	생활만족도4	.74***	1.07	.12	9.18
	생활만족도5	.70***	1.07	.12	8.83
우울	우울1	.65***	1		
	우울2	.57***	.97	.14	6.91
	우울3	.66***	1.14	.15	7.82
	우울4	.62***	.98	.13	7.41
	우울5	.55***	1.03	.16	6.64
	우울6	.84***	1.57	.17	9.53
	우울7	.85***	1.50	.16	9.56
	우울8	.84***	1.58	.17	9.36
	우울9	.78***	1.45	.16	8.83
	우울11	.58***	1.14	.17	6.90
	우울12	.81***	1.58	.17	9.15
	우울13	.71***	1.21	.15	8.28
	우울14	.87***	1.78	.19	9.65
	우울16	.62***	.91	.12	7.40
	우울17	.76***	1.37	.16	8.77
	우울18	.81***	1.48	.16	9.19
	우울19	.62***	.85	.12	7.32
	우울20	.77***	1.52	.17	8.82

***p<.001

[표 4-21] 양육모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상관계수	공분산	표준오차	C.R.
생활만족도 ↔ 우울	-.73***	-.28	.05	-5.55

***p<.001

1-2. 구조모형 검증

1)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의 효과

연구문제 2-1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4-5]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양육모의 학력, 이혼후 기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및 이혼 부-모 간 관계는 모든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 내에서 통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4-22]와 같다. χ^2 값은 553.52(df=353, p<.001)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 결과, RMSEA는 .06, CFI는 .93, TLI는 .92, SRMR은 .05로 모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양육모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553.52 (353)	<.001	.06	.93	.92	.05

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구조모형[17]에서 변수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4-23] 참조), 면접교섭 이행과 자녀양육비 지원이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17) 이외에도 가구소득의 매개효과 및 이혼 부-모 간 관계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음. 각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 결과에 포함하지 않음. 각 결과는 [부록 2-4], [부록 2-5]에 제시함

[그림 4-5] 양육모 구조모형: 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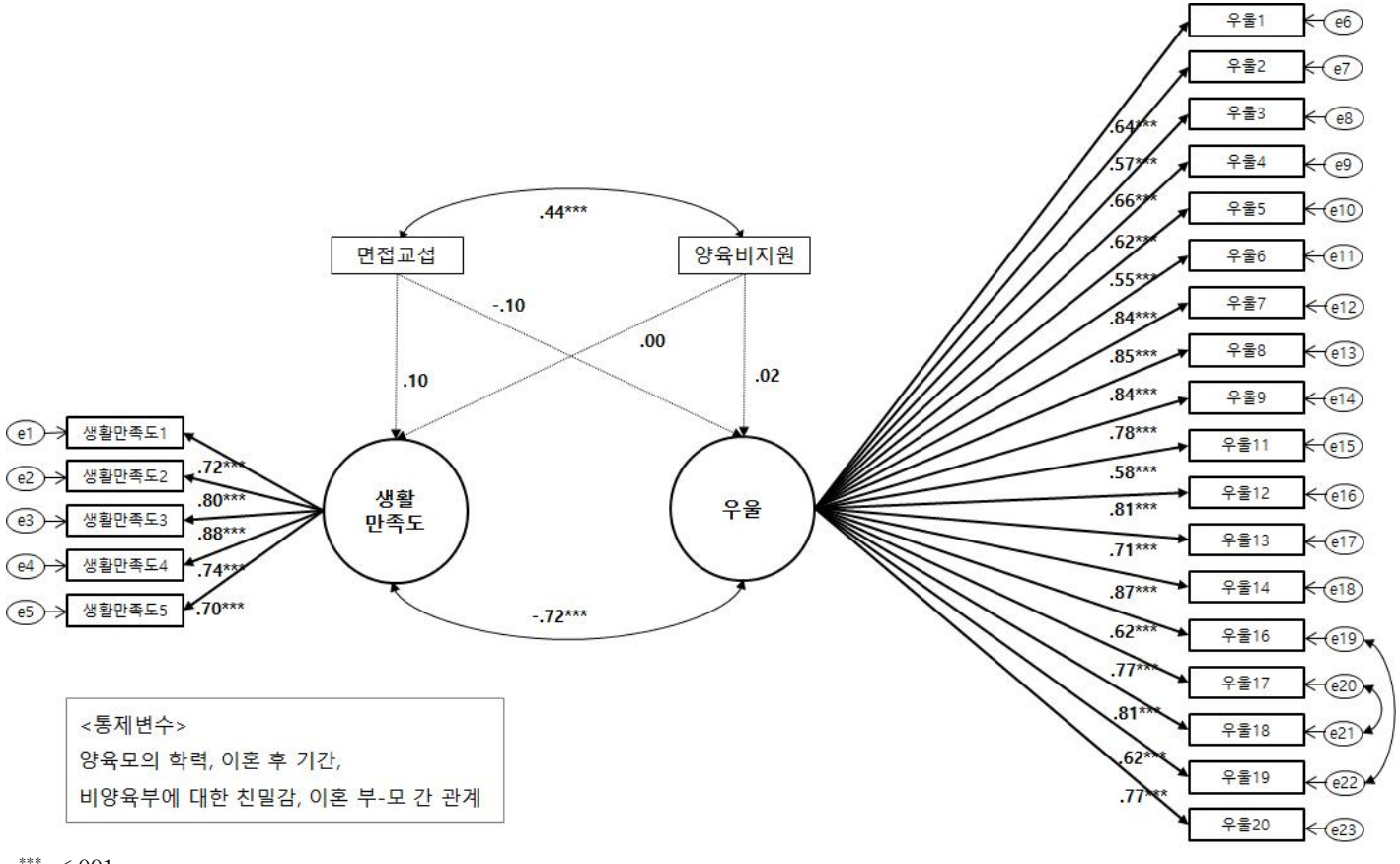

$^{***}p<.001$

[표 4-23] 양육모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면접교섭 → 생활만족도	.10	.14	.15	.91
면접교섭 → 우울	-.10	-.11	.11	-.97
양육비지원 → 생활만족도	.00	.00	.14	.03
양육비지원 → 우울	.02	.02	.10	.19

통제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4-24]와 같다. 양육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모의 우울(β=-.17, p<.05)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혼 후 경과된 기간이 길수록 양육모의 우울(β=-.23, p<.01)은 유의하게 낮았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과, 이혼 부-모 간 관계는 통상적 유의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양육모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었다.[18]

[표 4-24] 양육모 구조모형(면접교섭과 양육비지원) 통제변수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양육모 학력 → 생활만족도	.14†	.10	.06	1.74
양육모 학력 → 우울	-.17*	-.09	.04	-2.20
이혼후 기간 → 생활만족도	.14†	.11	.07	1.65
이혼후 기간 → 우울	-.23**	-.14	.05	-2.75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 생활만족도	.19†	.10	.06	1.76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 우울	-.01	-.00	.04	-.08
이혼 부-모 간 관계 → 생활만족도	.08	.05	.06	.90
이혼 부-모 간 관계 → 우울	-.15†	-.08	.04	-1.77

†p<.10 *p<.05 **p<.01

18) 단축형 CES-D를 사용하여 [그림 4-5]를 검증한 결과, 분석결과가 동일하였음.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의한 통제변수도 동일하게 나타남

2) 비양육부의 이행유형의 효과

연구문제 2-2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4-6]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4-6]에서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양육모의 학력, 이혼후 기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및 이혼 부-모 간 관계는 모든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4-25]와 같다. χ^2 값은 579.54(df=374, p<.001)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한 결과, RMSEA는 .06, CFI는 .93, TLI는 .92, SRMR은 .05로 나타났다. 이에 본 모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25] 양육모 구조모형(이행유형)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579.54 (374)	<.001	.06	.93	.92	.05

이행유형 관련 양육모 구조모형에서 변수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6]과 같다. 준거집단은 면접교섭만 이행하는 집단[19]이다. 비양육부가 면접교섭만 이행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양육비만 이행하는 경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모두 이행하는 경우, 전부 안하는 경우 양육모의 적응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19) 준거집단을 '둘 다 안함'으로 검증한 결과,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을 둘 다 안한 경우에 비해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모두 이행한 경우, 그리고 전부 안한 경우 양육모의 적응(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모두 없었음. 모형적합도는 [표 4-25]와 동일했음

[그림 4-6] 양육모 구조모형: 이행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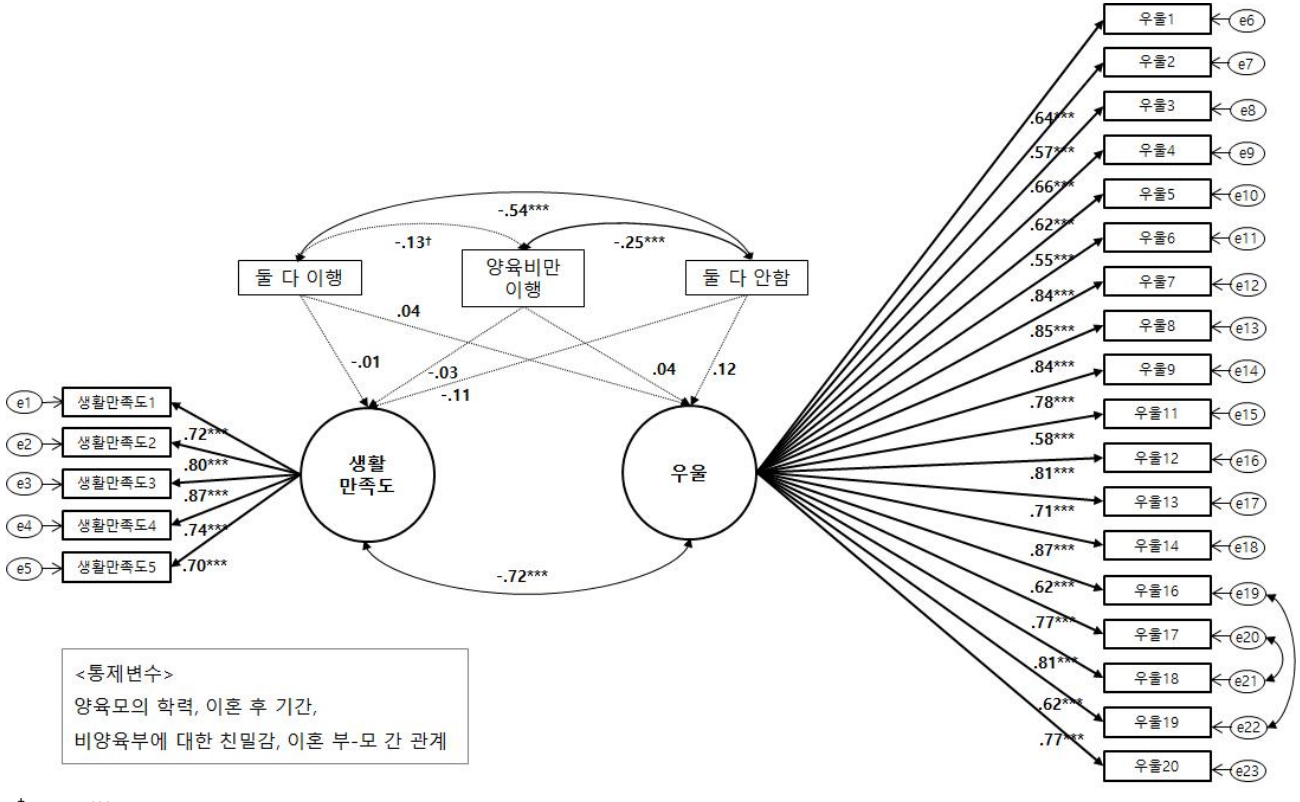

†p<.10 ***p<.001

*준거집단: 면접교섭만 이행

*둘 다 이행(면접교섭과 양육비 모두 이행), 둘 다 안함(면접교섭과 양육비 전부 안함)

[표 4-26] 양육모 구조모형(이행유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둘 다 이행 → 우울	.04	.05	.13	.44
둘 다 이행 → 생활만족도	-.01	-.02	.17	-.13
양육비만 이행 → 우울	.04	.08	.20	.41
양육비만 이행 → 생활만족도	-.03	-.10	.26	-.37
둘 다 안함 → 우울	.12	.13	.12	1.08
둘 다 안함 → 생활만족도	-.11	-.15	.16	-.94

통제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4-27]과 같다. 양육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모의 우울(β=-.17, p<.05)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이혼 후 기간이 길수록 양육모의 우울(β=-.23, p<.01)은 유의하게 낮았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에 정적으로,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양육모의 우울과 부적으로 통상적 유의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연관되었다.[20]

[표 4-27] 양육모 구조모형(이행유형) 통제변수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양육모 학력 → 생활만족도	.14†	.10	.06	1.75
양육모 학력 → 우울	-.17*	-.09	.04	-2.21
이혼후 기간 → 생활만족도	.14†	.11	.07	1.66
이혼후 기간 → 우울	-.23**	-.14	.05	-2.75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 생활만족도	.19†	.10	.06	1.76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 우울	-.01	-.00	.04	-.08
이혼 부-모 간 관계 → 생활만족도	.08	.05	.06	.88
이혼 부-모 간 관계 → 우울	-.15†	-.08	.04	-1.74

†p<.10 *p<.05 **p<.01

20) 단축형 CES-D를 사용하여 [그림 4-6]을 검증한 결과, 분석결과가 동일하였음. 비양육부가 면접교섭만 이행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양육비만 이행하는 경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모두 이행하는 경우, 전부 안하는 경우 양육모의 적응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음. 유의한 통제변수도 동일하게 나타남

3.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수인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생활만족도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우울을 각 측정변수가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검토한 결과는 [그림 4-7]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 4-28]에 제시하였다. χ^2 값은 771.05(df=515, p<.001)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을 때, RMSEA는 .05, CFI는 .92, TLI는 .91, SRMR은 .07로 측정모형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4-28] 한부모가족 측정모형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771.05 (515)	<.001	.05	.92	.91	.07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생활만족도 및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대한 요인적재값은 [표 4-29]에 제시하였다. 각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적재값은 모두 기준치 .05 이상이었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대부분의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상관계수는 .80 이하이므로 각 잠재변수 간 구분됨을 알 수 있다([표 4-30] 참조). 그러나 양육모의 우울과 청소년의 공격성 간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분석을 통하여 각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였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7] 한부모가족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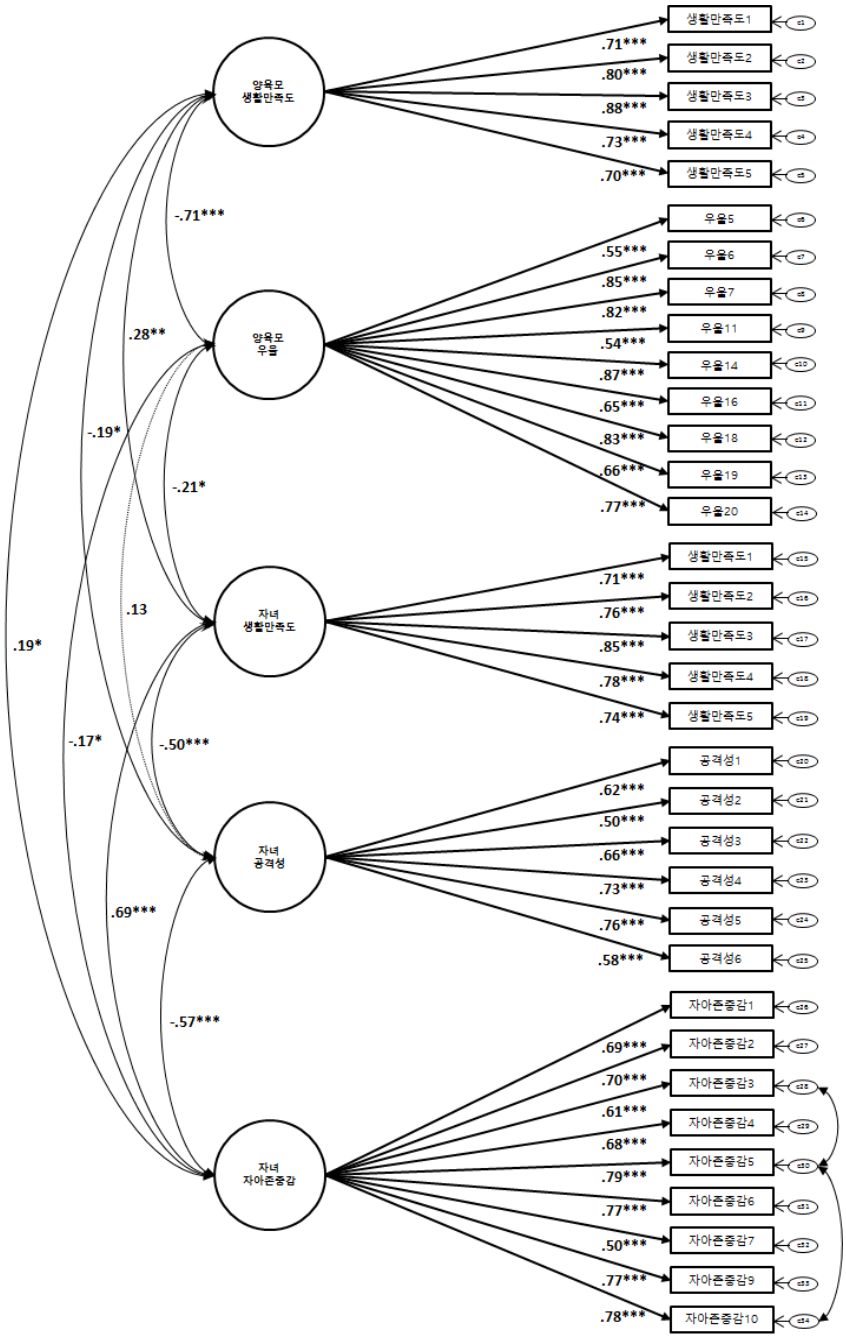

*p<.05 **p<.01 ***p<.001

[표 4-29] 한부모가족 측정모형 요인적재값

잠재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양육모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1	.71***	1		
	생활만족도2	.80***	1.10	.11	9.84
	생활만족도3	.88***	1.28	.12	10.64
	생활만족도4	.73***	1.07	.12	9.04
	생활만족도5	.70***	1.07	.12	8.72
양육모 우울	우울5	.55***	1		
	우울6	.85***	1.54	.20	7.63
	우울7	.82***	1.41	.19	7.54
	우울11	.54***	1.04	.18	5.82
	우울14	.87***	1.74	.23	7.72
	우울16	.65***	.92	.14	6.52
	우울18	.83***	1.47	.19	7.56
	우울19	.66***	.88	.13	6.61
	우울20	.77***	1.46	.20	7.26
청소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1	.71***	1		
	생활만족도2	.76***	1.14	.12	9.20
	생활만족도3	.85***	1.28	.12	10.39
	생활만족도4	.78***	1.09	.12	9.42
	생활만족도5	.74***	1.34	.15	8.88
청소년 공격성	공격성1	.62***	1		
	공격성2	.50***	.76	.14	5.54
	공격성3	.66***	1.10	.16	6.85
	공격성4	.73***	1.24	.17	7.54
	공격성5	.76***	1.44	.20	7.21
	공격성6	.58***	1.02	.18	5.79
청소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1	.69***	1		
	자아존중감2	.70***	1.15	.14	8.40
	자아존중감3	.61***	.89	.12	7.33
	자아존중감4	.68***	.88	.11	8.23
	자아존중감5	.79***	1.18	.13	9.30
	자아존중감6	.77***	1.22	.13	9.12
	자아존중감7	.50***	.62	.10	6.14
	자아존중감9	.77***	1.19	.13	9.20
	자아존중감10	.78***	1.00	.11	9.17

$^{***}p<.001$

[표 4-30] 한부모가족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상관계수	공분산	표준오차	C.R.
양육모 생활만족도 ↔ 양육모 우울	-.71***	-.28	.06	-5.02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생활만족도	.28**	.13	.04	2.98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공격성	-.19*	-.08	.04	-1.99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자아존중감	.19*	.09	.04	2.11
양육모 우울 ↔ 청소년 생활만족도	-.21*	-.08	.04	-2.31
양육모 우울 ↔ 청소년 공격성	.13	.05	.03	1.40
양육모 우울 ↔ 청소년 자아존중감	-.17*	-.07	.03	-1.93
청소년 생활만족도 ↔ 청소년 공격성	-.50***	-.22	.05	-4.33
청소년 생활만족도 ↔ 청소년 자아존중감	.69***	.32	.06	5.40
청소년 공격성 ↔ 청소년 자아존중감	-.57***	-.26	.06	-4.64

$^{*}p<.05$ $^{**}p<.01$ $^{***}p<.001$

2) 구조모형 검증

연구문제 3번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4-8]의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년과 양육모의 연령,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그리고 양육모의 학력, 이혼후 기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과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4-31]과 같다. χ^2 값은 1118.28(df=760, p<.001)로, 모형적합도의 수용기준(p>.05)에 부적합하였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한 결과, RMSEA는 .05, CFI는 .89, TLI는 .88, SRMR은 .06이었다. CFI 및 TLI 값이 수용기준인 .90에 약간 못 미침에 따라 본 연구모형은 좋은 모형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모형을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표 4-31] 한부모가족 구조모형 모형적합도

χ^2 (*df*)	*p*	RMSEA	CFI	TLI	SRMR
1118.28 (760)	<.001	.05	.89	.88	.06

구조모형에서 변수 간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32]에 제시하였다. 면접교섭의 이행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동시에, 양육모의 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자녀 및 양육모 구조모형의 분석결과와 모두 동일한 결과이다. 한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β=.28, p<.05)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는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β=-.18, p<.05). 자녀양육비 지원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전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계적 유의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지만,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행된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은(β=.16, p<.10) 경향이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 모형에서 자녀양육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는데,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과 함께 살펴본 결과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4-33]과 같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β=-.23, p<.01)과 생활만족도(β=-.23, p<.01)가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양육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β=.21, p<.05)이 높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이혼 부-모 간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양육모의 학력이 높을수록(β=-.17, p<.05), 그리고 이혼후 기간이 길수록(β=-.22, p<.01) 양육모의 우울이 유의하게 낮았다. 비양육부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친밀감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에 통상적 유의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본 연구는 면접교섭의 이행과 자녀양육비 지원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전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모의 적응의 매개효과가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8] 한부모가족 구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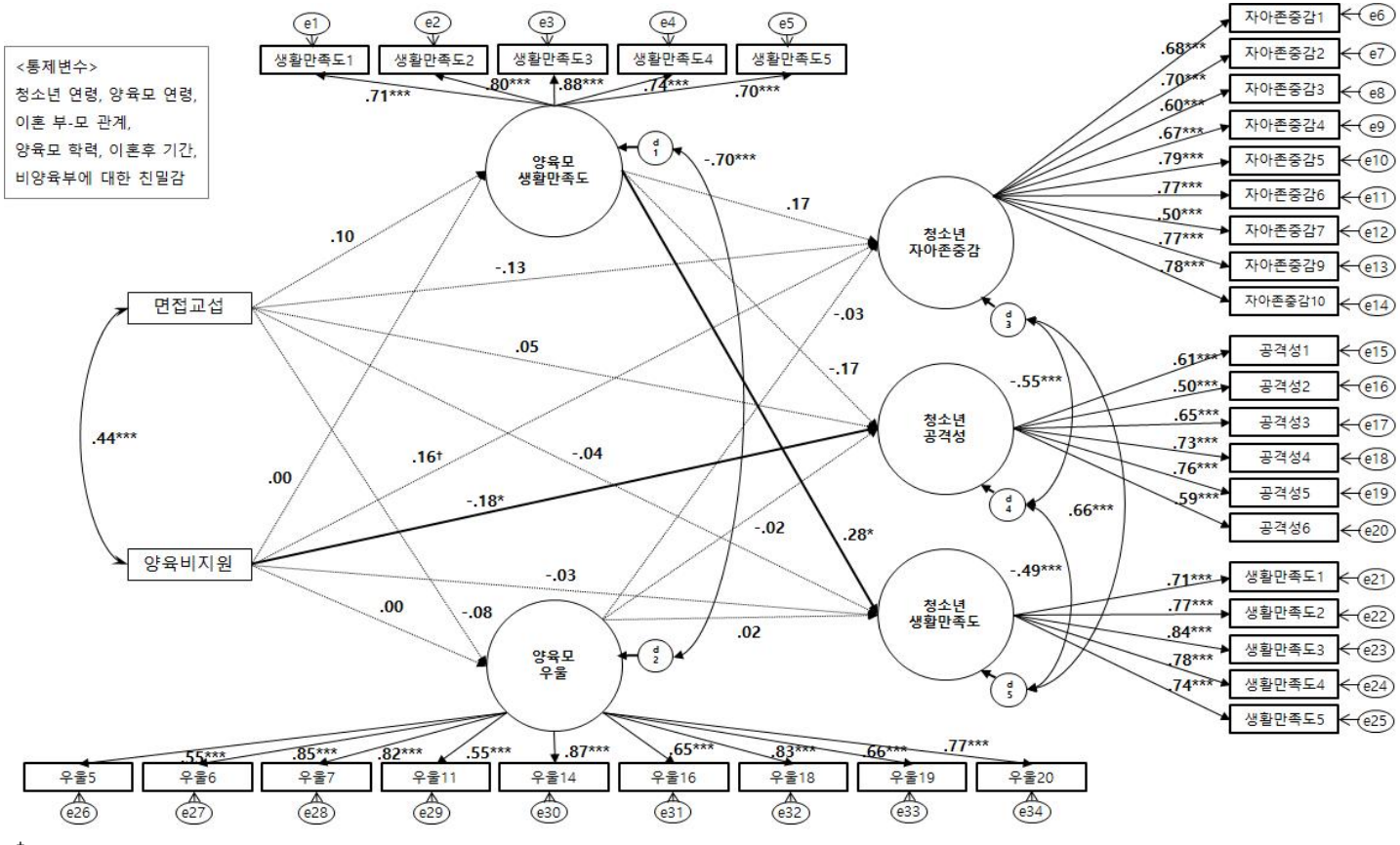

†p<.10 *p<.05 ***p<.001

[표 4-32] 한부모가족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면접교섭 → 양육모 생활만족도	.10	.14	.15	.94
면접교섭 → 양육모 우울	-.08	-.09	.12	-.77
면접교섭 → 청소년 자아존중감	-.13	-.18	.12	-1.43
면접교섭 → 청소년 공격성	.05	.07	.12	.56
면접교섭 → 청소년 생활만족도	-.04	-.05	.12	-.43
양육비지원 → 양육모 생활만족도	.00	.00	.14	.02
양육비지원 → 양육모 우울	.00	.00	.11	.04
양육비지원 → 청소년 자아존중감	.16†	.25	.13	1.91
양육비지원 → 청소년 공격성	-.18*	-.26	.13	-1.96
양육비지원 → 청소년 생활만족도	-.03	-.04	.13	-.34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자아존중감	.17	.17	.13	1.32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공격성	-.17	-.15	.13	-1.21
양육모 생활만족도 → 청소년 생활만족도	.28*	.27	.13	2.13
양육모 우울 → 청소년 자아존중감	-.03	-.04	.15	-.26
양육모 우울 → 청소년 공격성	-.02	-.02	.15	-.15
양육모 우울 → 청소년 생활만족도	.02	.02	.15	.13

† $p<.10$ * $p<.05$

[표 4-33] 한부모가족 구조모형 통제변수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오차	C.R.
청소년 연령 → 청소년 자아존중감	-.23**	-.07	.03	-2.67
청소년 연령 → 청소년 공격성	-.03	-.01	.03	-.31
청소년 연령 → 청소년 생활만족도	-.23**	-.07	.03	-2.62
양육모 연령 → 청소년 자아존중감	-.08	-.05	.06	-.90
양육모 연령 → 청소년 공격성	.21*	.14	.06	2.25
양육모 연령 → 청소년 생활만족도	-.08	-.05	.06	-.89
이혼 부-모 간 관계 → 청소년 자아존중감	.01	.00	.05	.06
이혼 부-모 간 관계 → 청소년 공격성	-.04	-.03	.05	-.48
이혼 부-모 간 관계 → 청소년 생활만족도	.08	.05	.05	.97
이혼 부-모 간 관계 → 양육모 생활만족도	.08	.05	.06	.93
이혼 부-모 간 관계 → 양육모 우울	-.14	-.07	.05	-1.56
양육모 학력 → 양육모 생활만족도	.13†	.09	.06	1.70
양육모 학력 → 양육모 우울	-.17*	-.10	.05	-2.16
이혼후 기간 → 양육모 생활만족도	.15†	.12	.07	1.72
이혼후 기간 → 양육모 우울	-.22**	-.14	.06	-2.46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 양육모 생활만족도	.19†	.10	.06	1.74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 양육모 우울	-.03	-.01	.05	-.29

†$p<.10$ *$p<.05$ **$p<.01$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내 한부모가족 정책으로 시행 중인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이 이혼한 모자가족의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면접교섭, 자녀양육비 이행과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매개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이행중인 정책 효과를 탐색하고, 정책이 의도한 목적대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11~19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 여성 한부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No. 2104/001-021). 수도권의 한부모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및 온라인 카페들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하였으며, 비확률 표집방법을 통해 조사대상을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Zoom,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양육모와 자녀가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양육모는 178명, 청소년 자녀는 172명으로 총 171쌍의 한부모가족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면접교섭은 청소

년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에 모두 어떤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면접교섭을 자주 할수록 유아 자녀의 문제행동이 감소하거나(Jackson, et al., 2009; Spjeldnes & Choi, 2008) 청소년 자녀가 생활에 잘 적응하고(유희정, 2005),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결과(이삼연, 2002)와 다르다. 반면 메타분석 결과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한 Amato와 Gilbreth(1999) 및 Adamsons와 Johnson(2013)의 결과와 같다.

반면 자녀양육비가 이행된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고, 공격성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분석 결과 자녀에게 미치는 자녀양육비의 효과 크기가 미미하여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Adamsons와 Johnson(2013)의 결과와 다르며, 자녀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달리 자녀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한 Amato와 Gilbreth(1999)의 결과와 같다.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비의 이행 여부는 양육모에게 질문하였으므로, 청소년 자녀가 자녀양육비의 이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가 비양육부의 자녀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르는 경우라도,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공격성에 부적으로 연관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유의하게 나타낸 결과와 대비된다. 차이검정에서도 자녀양육비 이행의 여부와 정기성은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다.

면접교섭의 이행은 구조모형 검정 결과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차이검정에서는 면접교섭 이행 여부에 따라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면접교섭

이 이행된 경우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점수가 더욱 높았다.

양육모는 전배우자에게 아버지로서의 부모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양육모 중 자녀양육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에 동의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이 이행될 경우 어느 정도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여 위안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손서희, 2013)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모에게 미치는 면접교섭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비양육부모의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에 양육부모가 죄책감을 지니거나(남혜연, 2021)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를 위해 비양육부모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성정현, 2017) 면접교섭의 이행은 양육부모의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면접교섭은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양육모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양육비 이행은 청소년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각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두 정책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양육모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모두 없었다. 이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을 포함한 비양육부의 자녀양육참여가 양육모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 변수를 경유하여 자녀의 문제행동과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외국 연구결과(Coates & Phares, 2019; Jackson et al., 2013, 2015)와 다르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제도와 법률이라도 다른 법문화권에서는 동일한 결과와 기능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최종고, 1995). 외국에서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주체인 비양육부모의 상당수가 미혼부이며(Huang & Han, 2012; Koppen et al.,, 2018), 사회 내 모자가족의 비율이 높다는 점(Coates & Phares, 2019)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에 대한 양육부모의 관점이 국내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변에 모

자가족이 적지 않고, 이혼이라는 법적 갈등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채 애정의 감소로 결별한 외국의 양육부모와, 애정의 감소와 더불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까지 이른 국내 양육부모(김영희, 한경혜, 2004)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해석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부모의 이혼이나 결별 후 양쪽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정이 법률에 내포됨에 따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Amato, Meyers, & Emery, 2009; Maccoby et al., 1990). 이에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지원, 공동부모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보다 합의를 이룬 듯 보인다. 국내의 경우 비양육부의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작된 것은 2015년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전후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7년 면접교섭권이 비양육부모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로 인정되고, 2009년부터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에게 미치는 국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은 외국과 다를 수 있다.

한편 양육모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결과(백승희 외, 2019; Coates & Phares, 2019; Jackson et al., 2013)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모는 청소년 자녀의 동거 가족으로, 자녀에게 가장 인접한 환경이다. 양육모의 적응은 자녀의 적응과 유의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넷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유형은 둘 다 안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면접교섭만 이행한 경우, 둘 다 이행한 경우 양육모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모두 미치지 않았다. 이는 차이검정에서 면접교섭의 이행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이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모두 어떠한 차이도 야기하지 못한 결과와 동일하다.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둘 다 안하는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비만 이행된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또한 비양육부가 면접교섭만 이행한 경우보다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욱 낮았다. 이는 차이검증 결과와 일치한다. 종합하면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가 함께 이행되는 것은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부모의 적응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 2 절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mato와 Gilbreth(1999)의 결론과 같이 자녀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면접교섭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아무런 영향도 유의하게 미치지 않았다. 비양육부가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공격성이 낮았다. 한편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모두 양육모에게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최근 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법률로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녀양육비 이행은 이혼한 모자가족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공격성을 낮추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녀양육비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양육비 이행이 왜 청소년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동거가족인 양육모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과 양육모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김현숙, 2017; Choi, 2010; Spjeldnes & Choi, 2008)을 보고한다. 그러나 상관분석 및 추가분석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한부모가족의 가구소득을 증가시켰음에도, 가구소득은 청소년 자녀 및 양육모의 적응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떠한 이유로 국내에서 자녀양육비의 효과가 양육모의 생활

만족도와 우울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약 52만원이었고, 자녀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약 69%였다. 자녀양육비 수령액이 약속된 자녀양육비 금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지, 양육모에게 충분하지 않은지, 자녀 몇 명에 대한 수령액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조사가 추후 요구된다.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면접교섭만 이행한 경우보다 자녀양육비만 이행한 경우 자녀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았던 결과는 현재 시행되는 면접교섭의 효과에 의구심을 지니게 한다. 면접교섭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다면, 비양육부가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를 둘 다 이행한 경우 둘 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청소년 자녀의 적응이 보다 유의하게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뜻한다.

면접교섭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에 대해 Adamsons와 Johnson(2013) 및 Amato와 Gilbreth(1999)는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비동거중인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친밀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성희(2011)는 이혼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아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는 면접교섭이라고 주장하였다(조성희, 2018).

상관분석 및 추가분석 결과, 면접교섭의 이행은 비양육부에 대한 자녀의 친밀감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그러나 비양육부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친밀감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하게 연관되지 않았다. 이는 비양육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지닐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결과(조성희, 2011)와 다르다. 또한

양육모의 적응에 청소년 자녀의 적응이 유의하게 연관된 것과 대비된다.

본 연구 결과 중 면접교섭을 이행한 경우 그 빈도와 시간을 살펴보면, 6개월 동안 면접교섭을 1번 실시한 비율은 약 21%였다. 3개월에 1번 가량 자녀가 비양육부를 만난 비율도 약 23%이다. 1개월에 한 번 이상 비양육부와 자녀가 만난 비율은 약 31% 미만이었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60% 가량이 면접교섭 시 비양육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는 비양육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도 28% 존재한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다른 해에 비해 비양육부와 자녀 간 대면 접촉이 보다 소홀했을 수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 이행의 절대적인 양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을 이행할 경우 이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비양육부에 대한 자녀의 친밀감이 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비양육부가 실질적인 친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이행된 면접교섭의 양을 고려할 때, 면접교섭이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질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면접교섭 시간에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은 대부분 식사하기였고, 다음으로 쇼핑하기, 함께 놀기 순으로 나타났다. 비양육부와 대화하거나, 공부나 과제를 같이 한다는 응답은 적었다. 제한된 시간에 식사나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며 조언하려는 태도가 비양육부모에게 요구된다(Adamsons & Johnson, 2013; Amato & Gilbreth, 1999; King & Sobolewski, 2006). 이를 통해 자녀는 '양육자'로서 비양육부모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은 그 여부만큼 양과 질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면접교섭의 이행이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Nielsen(2018)은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의 양과 양육의 질이 함께 동반되어야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녀의 시간 중 최소한 35%부터 약 50%가량을 비양육부모와 보내야 하는 공동양육(shared parenting)의 유익함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면접교섭의 빈도와 더불어, 함께 하는 최소한의 시간의 양이 확보되어야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주장한다(Braver & Lamb, 2018; Nielsen, 2014). 국내에서 면접교섭 시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요구된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접교섭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면접교섭 시 비양육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언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자녀와 만나면서 양육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양육부모의 양육방식과 다른 메시지로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Kang & Ganong, 2020). 이는 자녀의 정서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양육부모와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고민 등을 상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혼한 부-모 간 이러한 대화가 어렵다면 제3자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해 면접교섭 전에 자녀에 관하여 서로 숙지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논의되고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녀의 면접교섭 의사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독일은 자녀가 면접교섭을 분명히 거부하는 경우를 자녀복리의 위협으로 인정한다(최민수, 2018). 현재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자녀의 마음이 진실한지 알아보도록 상담을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의 위험이나, 자녀에게 정서적인 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비양육부모가 요구할 때 면접교섭은 이행될 것이다. 자녀의 의사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듯 보인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면접교섭을 이행함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함께 자녀의 면접교섭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이영민, 2014).

본 연구는 면접교섭의 이행이 강조되는 만큼, 준비되어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면접교섭의 이행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면접교섭의 양과 질이 모두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배우자의 유책 여부 및 갈등의 정도와 관계없이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모두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의무와 책임, 필요성을 이혼 전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면접교섭의 이행 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양육부모가 면접교섭 중 또는 양육부모가 면접교섭 전후로 자녀에게 하지 않아야 할 언행, 면접교섭에서 비양육부모에게 추천되는 양육활동 등이 양쪽 부모에게 모두 교육되고 숙지되어야 할 것이다.

면접교섭을 실시할 경우 비양육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만남의 빈도 및 주기도 자녀의 의사 및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쪽 부모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협의해야 할 것이다. 면접교섭의 이행에 있어서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를 청취하고, 존중하려는 자세와 절차도 필요하다. 이렇듯 양과 질이 보장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권리이지만, 일정한 합의를 기초로 한 이혼 당사자보다 결정된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미성년 자녀의 심리·정서적 충격을 보다 배려해야 할 것이다(박득배, 2018). 따라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도록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 면접교섭을 장려함과 동시에 국가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별 가족의 상황 등을 검토하고, 면접교섭을 전후로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비는 현행법에 따라 비양육부모에게 그 이행이 지속적으로 장

려되는 동시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이자, 실제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녀양육비 이행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보다 널리 홍보되어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구축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 자녀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으로 작용하였다. 자녀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인지발달, 학업성적과 학업적 역량에도 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다(Amato & Gilbreth, 1999; Choi & Pyun, 2014; King, 1994; Knox, 1996). 인지발달과 학업적 역량에 미치는 자녀양육비의 긍정적인 효과도 앞으로 학문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양육모와 그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최신의 쌍(dyad)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는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자녀와 그 양육모에게 함께 질문함으로써 응답의 편견이나 오차 발생을 줄이고,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Ganong et al., 2012).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적응,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특성 등 최근 한부모가족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국내 한부모가족에게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존에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비 이행의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171쌍의 청소년 자녀와 그 양육모에게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설계에 한부모가족을 고려하였다. 그동안 자녀양육비의 이행에 대한 평가는 주로 자녀양육비 이행률이나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박복순 외, 2020). 그러나 본 연구는 정책의 대상인 한부모가족의 실생활에 미치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양육모의 적응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것도 실제 한부모가족의 관계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 설계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대상의 모집 및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에게 쌍(pair)으로 설문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비확률표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연령은 11~19세에 한정하였으며, 양육모와 친밀한 자녀가 설문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10세 이하 아동 자녀와 그 양육모에게 본 연구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총 171쌍의 이혼 한부모가족 양육모와 청소년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의 수(*N*)가 작음에 따라 구조모형에서 보다 충분한 수의 매개변인을 함께 검증하거나, 통제변인을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통제변인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같은 시점에서 조사됨에 따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 한계를 지닌다. 비록 조사 시점에서 면접교섭은 지난 6개월 동안 이행 여부를, 자녀양육비는 지난 1년 동안 이행 여부를 회고적으로 문의하였고, 내생변수인 청소년 자녀의 생활만족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및 양육모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함에 따라 시간적 우선성을 최소한으로 확보하였으나, 향후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인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각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적합도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모형은 엄격히 살펴볼 경우 상대적 적합도 지수들에서 좋은 모형적합도를 갖지 못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 관련 변수들에 연관성이 높은 외생변수들이 아니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라는 외생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결과이므로 해당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통제변수 중 과거 이혼 부-모 간 관계를 대리하여 조사시점에 응답된 이혼 부-모 간 관계를 사용하였다. 이혼 당사자 간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변수 활용에 있어 제한점을 갖는다.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표집방법으로 충분한 인원의 한부모가족 양육부모와 자녀에게 국가 차원에서 종단적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자녀의 적응에 대한 문항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부모가 인식하는 자

녀의 적응과 실제 자녀가 인지하는 적응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응답자로서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와 한부모의 적응에 대해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조사가 실시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이행이 장려되고 있는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이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각 정책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양육모의 적응이 매개하는지 계량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의 이행유형이 청소년 자녀와 양육모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양육비 이행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정책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면접교섭 이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강지원(2010).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관련 쟁점. **보건복지포럼, 168**, 90-101.

강현구(2014). **아동권리관점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형성과정 및 법령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곽민희(2013). 프랑스법상 조부모의 방문권(droit de visite). **가족법연구, 27**(3), 177-208.

고선강(2014).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국가인권위원회(2018).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권혜림(2021.07.02.). 이달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가능... "5000만원 한도, 무용지물". 중앙일보. 2021년 10월 20일 인출 fr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5010

김민지(2017). 면접교섭권 확대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37**, 83-123.

김상용(1997). 소위 친권행사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족법연구, 11**, 253.

김서영(2021.07.19.). 떠나는 '배드파더스' 빈자리 걱정되는 이유. 주간경향. 2021년 10월 20일 인출 from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107191038041&code=115

김수영(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김수정(2005).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면접교섭권. **가족법연구, 19**(1), 309-347.

김승권, 김인숙, 박동은, 이배은, 이용교, 이재연, 이호균, 황옥경(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정책자료 2009-04).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김연(2012). 한국법상 이혼과 자의 부양방법. **법학논고, 39**, 141-174.

김영희, 한경혜(2004).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부모역할 보상과 비용이 이혼한 부모의 협력적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201-217.

김유미(2013). 자녀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법학연구, 54**(1), 93-119.

김은정(2019).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78**, 56-69.

김은지, 최인희, 송효진, 배호중, 최진희 (2018).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연구보고 2018-61). 서울: 여성가족부.

김현숙(2017). 한부모가족 소득의 변화궤적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청소년복지연구, 19**(4), 159-189.

김현정, 정순희(2001). 이혼 시 자녀양육비 판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지침 방향 제시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2**(3), 67-87.

김현진(2020).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3**(1), 291-324.

남혜연(2021). **여성한부모의 양육죄책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연규, 최현수(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2), 135-165.

박득배(2018). 자(子)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권. **가족법연구, 32**(1), 149-181.

박병호, 김유미(1994). 판례연구: 과거의 양육비 구상 - 대법원 1994. 5. 13. 고지,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법학, 35**(3/4), 205-226.

박복순(2019).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인권법평론, 22**, 37-84.

박복순, 김은지, 김효정, 고현승, 유경희, 손서희(2020). **양육비이행지원 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20 연구보고서-10).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소영(2016).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황 및 운영상 쟁점.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 6-14.

백승희, 전현정, 이정민, 정혜원(2019). 모와 자녀가 지각한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 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30**(2), 93-118.

변주수(2017). **이혼법 개정과 이혼율 변동의 관계: 2000년 이후 이혼숙려제도 및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정아, 김혜원(2013).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연구보고 13-R14-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정현(2017). 이혼한 여성 한부모들의 자립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5), 137-152.

성희자(2012). 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연구: 양육자 지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2), 3-21.

손서희(2013). 이혼한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본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 **대한가정학회지, 51**(4), 439-454.

손서희(2012). 이혼 후 비동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와 한부모 어머니의 이혼 후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23-41.

신서연(2011). **한국어판 단축형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들의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영미, 진미정(2021). 이혼 후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에 양육부모의 동기 요인이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9**(1), 31-43.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2018).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집**(2018-KIHF-98).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73-104.

윤진수(2005).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 8, 1-46.

윤홍식(2003).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3**, 51-7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2021). 2021년 12월 2일 인출 from http://childfriendlycities.kr/

유치선, 강현철(2020).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주요 적합도 지수들의 제1종 오류에 대한 평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1), 111-119.

유희정(2005). 이혼 후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185-217.

임선희, 명재신(2016).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327-347.

이경은(2016).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입법과 정책, 8**(2), 193-219.

이경희(2006). **이혼 후 한부모의 적응관련요인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봉주, 신원영(2017). 아동권리지수 적용을 통한 아동권리 비교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8**, 171-203.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

학, 10, 37-65.
이영민(2014).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권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경(2004).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자영, 남숙경, 최보영, 이지희, 박양민, 이상민(2009). 문화차에 의해 발생한 심리검사 문항의 번역오류: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8번 문항의 수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3), 1345-1358.
이재연, 안동현, 황옥경, 구정화, 설동훈, 우남희, 이부미, 이양희, 정채옥, 정현숙, 조흥식(2007). **아동과 권리**. 서울: 창지사.
이재연, 황옥경, 강현아, 서영숙, 이완정, 구은미, 정선아(2018). **아동권리와 복지**. 서울: 창지사.
이주리 (2008).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재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51-60.
이화숙(2009). “자녀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사법, 1**(10), 3-45.
이희정(2010).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제언.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2). 107-131.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이윤(2016).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28**(1), 271-313.
조맹제, 김계희(1993). 主要憂戀症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o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조붕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조성희(2018).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7**(2), 157-168.
조성희(2011). **이혼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흥식(2000). 아동권리지표에 따른 '아동최선의 이익'정책이행분석. **한국사회과학, 22**(3), 187-218.
차경옥(1998). **자녀양육비 지원실태 및 효과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민수(2018). 독일법상 조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적 고찰 -면접교섭권자의 범위에 관한 독일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이론과 실무, **22**(1), 221-275.
최종고(1995). 법학의 비교연구방법. **비교문화연구, 2**, 143-166.
현소혜 (2015). 조부모와 계부모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해석론과 입법론. **가족법연구, 29**(2), 1-34.
황옥경, 안동현, 이호균, 강현아, 홍관표, 현소혜, 정선영(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19**(1), 161-177.
홍세희, 정송(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Adamsons, K. & Johnson, S. K. (2013). An updated and expanded mata-analysis of nonresident fathering and chil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4), 589-599.
Allport, B. S., Johnson, S., Aqil, A., Labrique, A. B., Nelson, T., Carabas, Y., & Marcell, A. V. (2018). Promoting father involvement for child and family health. *Academic Pediatrics,*

18(7), 746-753.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1), 23-38.

Amato, P. R., & Gilbreth, J. G. (1999). Noresident fathers and children's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557-573.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Amato, P. R., Meyers, C. E., & Emery, R. E. (2009). Changes in nonresident father-child contact from 1976 to 2002. *Family Relations, 58*(1), 41-53.

Amato, P. R. & Rezac, S. (1994). Contact with nonresident parent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15*(2), 191-207.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oyan, S. B. & Termini, A. M. (2003). 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 Shielding your child from conflict. 홍경자, 차영희, 최태산, 최유경 역(2009).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자녀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서울: 학지사.

Braver, S., & Lamb, M. E. (2018). Shared parenting after parental separation: The views of 12 exper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9*(5), 372-387.

Brody, G. H., & Flor, D. L. (1997). 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family processes, and child adjustment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00-1011.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Choi, J-K. (2010). Nonresident fathers' parenting, family processes,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urban, poor, single-mother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84*(4), 655-677.

Choi, J-K., Palmer, J. & Pyun, H-S. (2014). Three measures of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low-income single-mother familie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19*, 282-291.

Choi, J-K., & Pyun, H-S. (2014). Nonresident father's financial support, informal instrumental support, mother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single-mother families with low income. *Journal of Family Isssues, 35*(4), 526-546.

Coates, E., & Phares, V. (2019). Pathways linking nonresident father involvement and child outcom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6), 1681-169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1991). General guideline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 1(a), of the convention. United Nations. Retrieved from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37523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Edin, K., Nelson, T., Butler, R., & Francis, R. (2019). Taking care of mine: Can child support become a family-building institution?.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1*(1), 79-91.

Elam, K., Sandler, I., Wolchik, S., Tein, J-Y. (2016). Non-residentail father-child involvement, interparental conflict and mental health of children following divorce: A persen-focused approac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3), 581-593.

Emery, R. E., & Dillon, K. D. (1994). Conceptualizing the divorce process: Renegotiating boundaries of intimacy and power in the divorced family system. *Family Relations, 43*(4), 374-379.

Fox, L. (2019). *The supplemental poverty measure: 2018*(P60-268(RV)). U.S. Census Bureau.

Furstenberg, F. F., Morgan, S. P., & Allison, P. D. (1987). Paternal participation and children's well-being after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5), 695-701.

Ganong, L., Coleman, M., & McCaulley, G. (2012). Gatekeeping after separation and divorce. In K. F. Kuehnle, & L. M. Drozd. *Parenting plan evaluations: Applied research for the family court* (pp. 369-39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ealy, J. M., Malley, J. E., & Stewart, A. J. (1990). Children and their fathers after parental separ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4), 531-543.

Hofferth, S. L., Forry, N. D., & Peters, H. E. (2010). Child support, father-child contact, and preteens' involvement with nonresidential fathers: Racial/ethnic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1*(1), 14-32.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Huang, C-C. & Han, K-Q. (2012). Child support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Has policy made a differ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34*(4), 622-627.

Jackson, A. P., Choi, J-K., & Franke, T. M. (2009). Poor singl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Mastery, relations with nonresident fathers, and child outcomes. *Social Work Research, 33*(2), 95-106.

Jackson, A. P., Choi, J-K., & Preston, K. S. J. (2015).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with young black childre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a mediational model. *Social Work Research, 39*(4), 245-254.

Jackson, A P., Preston, K. S. J. & Thomas, C. A. (2013). Single mothers, nonresident fathers, and preschoolers'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9*(1), 129-140.

Johnston, J. R., Kline, M., & Tshann, J. M. (1989).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Effects on children of joint custody and frequent acc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4), 276-592.

Kang, Y. & Ganong, L. (2020). Divorced fathers' perceptions of parental disclosures to children. *Family Relations, 69*(1), 36-50.

King, V. (1994). Nonresident father involvement and child well-being:

Can dad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5*, 78-96.

King, V., & Heard, H. E. (1999). Nonresident father visitation, parent conflict, and mother's satisfaction: What's best for chil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2), 385-396.

King, V., & Sobolewski, J. M. (2006). Nonresident father's contributions to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3), 537-557.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이현숙, 장승민, 신혜숙, 김수진, 전경희 역 (2020). **구조방정식 모형: 원리와 적용**. 서울: 학지사.

Knox, V. (1996). The effects of child support payments on developmental outcomes fo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1*(4), 816-840.

Koppen, K., Kreyenfeld, M., & Trappe, H. (2018). Loose ties? Determinants of father-child contact after separation i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5), 1163-1175.

Maccoby, E. E., Depner, C. E., & Mnookin, R. H. (1990). Coparenting in the second year after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1), 141-155.

Mahrer, N. E., O'Hara, K. L., Sandler, I. N., & Wolchik, S. A. (2018). Does shared parenting help or hurt children in high-conflict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9*(4), 324-347.

Masheter, C.(1991). Postdivorce relationships between ex-spouse: The role of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1), 103-110.

Modecki, K. L., Hagan, M. J. Sandler, I., & Wolchik, S. A. (2015).

Latent profiles of nonresidential father engagement six years after divorce predict long-term offspring outcome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4*(1), 123-136.

Moore, E. (2012). Paternal banking and maternal gatekeeping in postdivorce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33*(6), 756-772.

Nepomnyaschy, L., Miller, D. P., Garasky, S., & Nanda, H. (2014). Nonresident fathers and child food insecurity: 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Social *Service Review, 88*(1), 92-133.

Nielsen, L. (2018). Joint versus sole physical custody: Children's outcomes independent of parent - child relationships, income, and conflict in 60 stud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9*(4), 247-281.

Nielsen, L. (2014). Shared physical custody: Summary of 40 studies on outcomes for 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5*(8), 613-635.

Northrop, E. M. (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d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24*(1), 145-160.

Peters, E., Argys, L., Howard, H., & Butler, J. S. (2004). Legislating love: The effect of child support and welfare policies on father-child contact.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2*(3), 255-274.

Petras, H., Schaeffer, C. M., Ialongo, N., Hubbard, S., Muthen, B., Lambert, S. F., Poduska, J., & Kellam, S. (2004). When the course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does not predict antisocial outcomes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n examination of potential explanatory variab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919-94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ssell, L. T., Beckmeyer, J. J., Coleman, M., & Ganong, L. (2016). Perceived barriers to postdivorce coparenting: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ssociations with coparentiong behaviors. *Family Relations, 65*, 450-461.

Sano, Y., Richards, L. N., Zvonkovic, A. M. (2008). Are mothers really "Gatekeepers" of children?: Rural mothers' perceptions of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12), 1701-1723.

Seltzer, J. A., & Meyer, D. R. (1994). Child support and children's well-being. *Wisconsin Family Impact Seminars*, 9-32.

Slade, A. 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sident father involvement and maternal depression in fragile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87*(1), 3-39.

Spjeldnes, S., & Choi, J-K. (2008).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interparental relationship quality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low-income, black, single-mother families. *Marriage & Family Review, 44*(4), 411-438.

Turner & Waller (2017). Indebted relationships: Child support arrears and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9*(1), 24-43.

Westphal, S. K., Poortman, A-R., & Lippe, T. (2014). Non-resident father-child contact across divorce cohorts: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marriag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4), 444-456.

부 록

Ⅰ. 주요변수 설문 문항

1. 생활만족도 [청소년, 양육모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체로 내 이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	1	2	3	4	5
2. 현재 나는 아주 좋은 생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지금까지 내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	1	2	3	4	5
5. 만약 다시 산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처럼 살겠다.	1	2	3	4	5

2. 공격성 [청소년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1	2	3	4	5
2. 나는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1	2	3	4	5
4. 나는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1	2	3	4	5
5. 나는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5
6.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1	2	3	4	5

3. 자아존중감 [청소년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1	2	3	4	5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5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5

4. 우울 [양육모 대상]

[보기 설명]
0.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미만
1.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
2.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4일
3.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지난 일주일 간 나는...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1	2	3	4
2. 먹고 싶지 않았고, 식욕이 없었다.	1	2	3	4
3.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1	2	3	4
4.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1	2	3	4
5.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6.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7.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8. 앞 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1	2	3	4
9.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10.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12. 두려움을 느꼈다.	1	2	3	4
13.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1	2	3	4
14.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15.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16.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7.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1	2	3	4
18. 마음이 슬펐다.	1	2	3	4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20.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

Ⅱ. 추가분석 결과

1.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의 매개효과 검증

* $\chi^2(269)=434.46$, $p<.001$, RMSEA=.06, CFI=.91, TLI=.89, SRMR=.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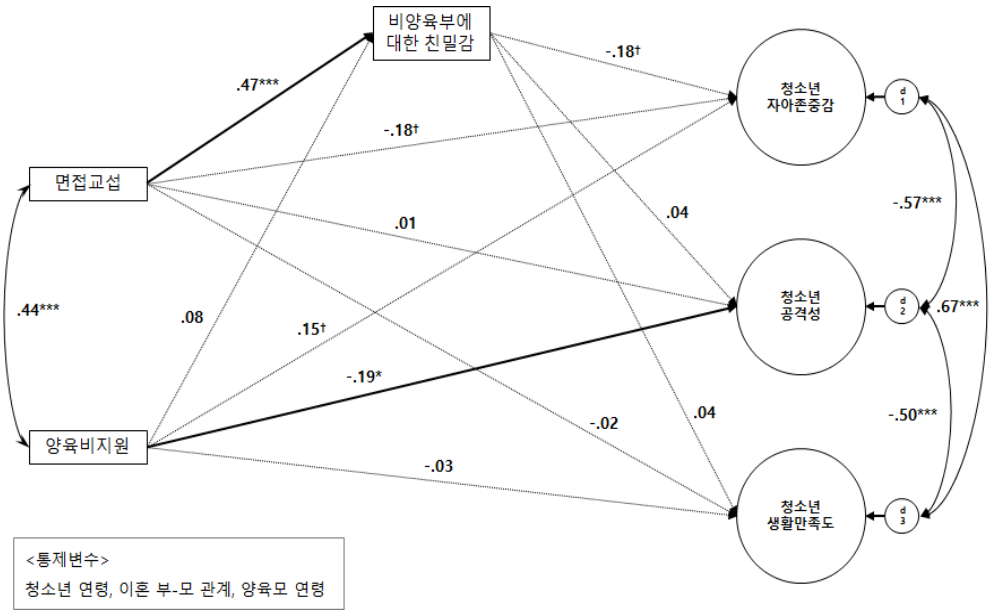

†$p<.10$ *$p<.05$ ***$p<.001$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이 매개하는지 위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4-9]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연령, 이혼 부-모 간 관계와 양육모의 연령은 모든 잠재변수에, 이혼 부-모 간 관계는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면접교섭의 이행은 비양육부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친밀감

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β=.47, p<.001),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자녀양육비 이행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다(β=-.19, p<.05).

부트스트래핑 결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서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그 범위에 모두 0을 포함하였다. 즉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이 매개하지 않았다.

2.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 가구소득의 매개효과 검증

* χ^2(270)=420.05 p<.001, RMSEA=.06, CFI=.91, TLI=.90, SRMR=.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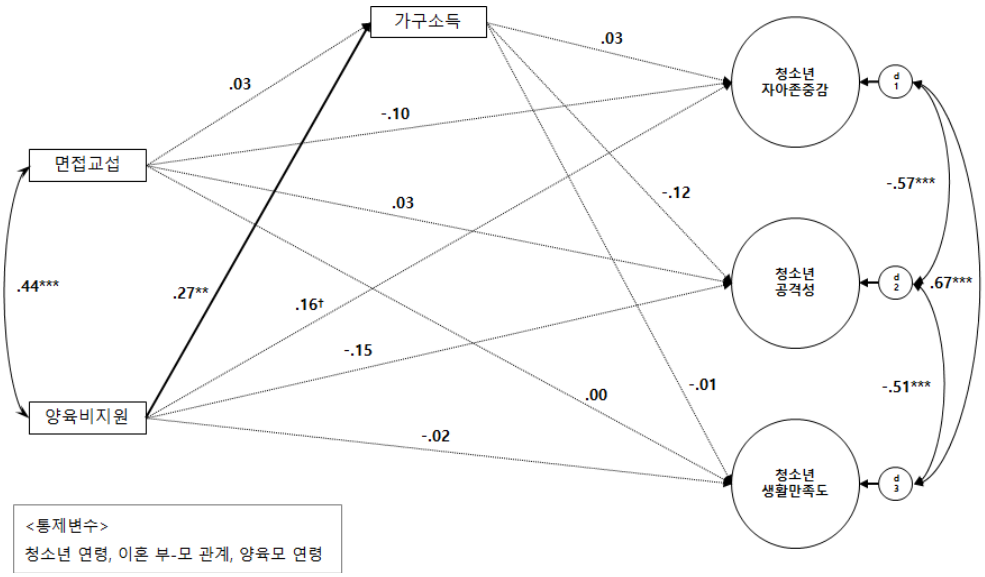

†p<.10 **p<.01 ***p<.001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가구소득이 매개하는지 위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4-9]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연령, 이혼 부-모 간 관계와 양육모의 연령이 모든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가구소득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β=.27, p<.01), 가구소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서 가구소득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그 범위에 모두 0을 포함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가구소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 자녀 구조모형: 이혼 부-모 간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이혼 부-모 간 관계가 조절하는지 하단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4-9]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연령과 양육모의 연령은 모든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의 연결 관계는 생략하였다.

분석 결과, '면접교섭x이혼 부-모 관계', '양육비지원x이혼 부-모 관계'의 상호작용변수들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과 상호작용변수들을 평균중심화하지 않아 상호 상관이 높고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그러나 평균중심화는 선택사항으로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닐 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변수의 p-value는 평균중심화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김수영, 2006; Kline, R. B., 2016)에 따라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상호작용변수의 표준화된 계수는 식[21]을 통해 정확히 계산(홍세희, 정송, 2014)하여 그림 내 표기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 이혼 부-모 간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 $\chi^2(284)=443.17$, $p<.001$, RMSEA=.06, CFI=.91, TLI=.89, SRMR=.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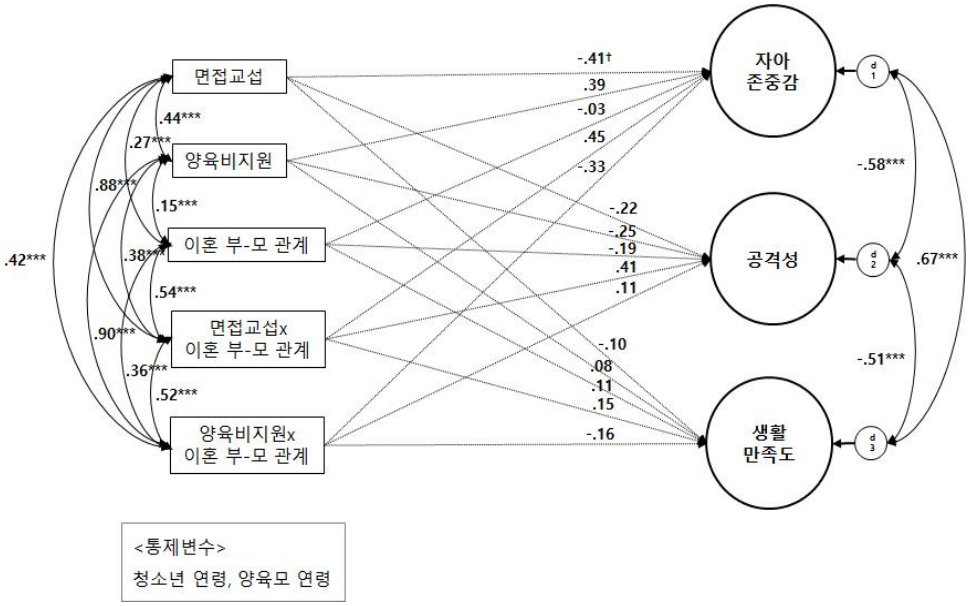

†$p<.10$ ***$p<.001$

21) 수정된 표준화된 계수 $\beta_3^c = \beta_3 \dfrac{\sqrt{var(X)\,var(Z)}}{\sqrt{var(XZ)}}$

4. 양육모 구조모형: 가구소득의 매개효과 검증

* $\chi^2(376)=576.65$, $p<.001$, RMSEA=.06, CFI=.93, TLI=.92, SRMR=.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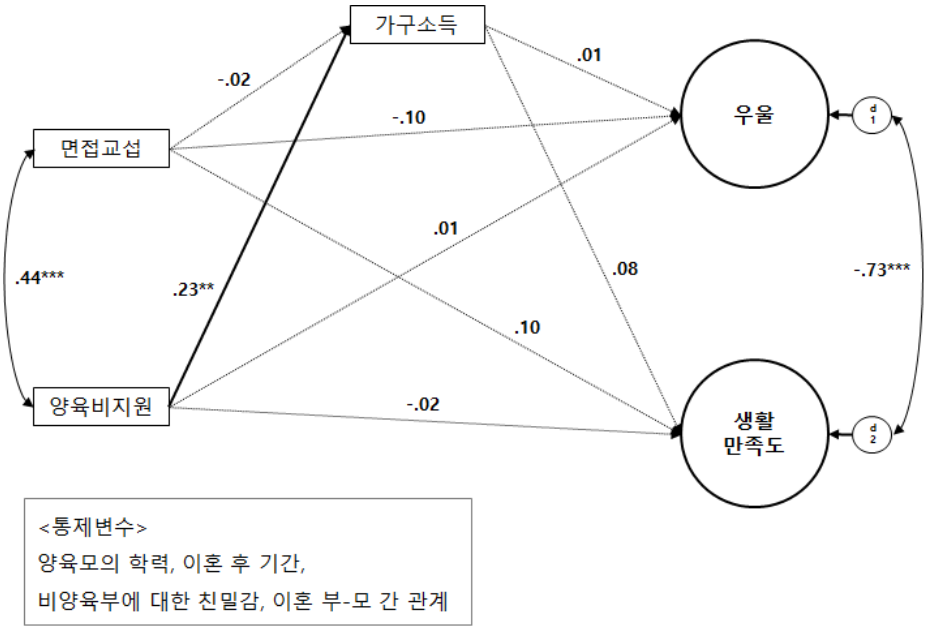

$^{**}p<.01$ $^{***}p<.001$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가구소득이 매개하는지 위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 간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4-9]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양육모의 학력, 이혼후 기간,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 이혼 부-모 간 관계는 모든 잠재변수에, 양육모의 학력과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양육비 이행은 가구소득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β=.23, $p<.01$), 가구소득은 양육모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에서 가구

소득을 경유한 간접효과는 모두 그 범위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구소득의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5. 양육모 구조모형: 이혼 부-모 간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 $\chi^2(395)=621.41$, $p<.001$, RMSEA=.06, CFI=.92, TLI=.91, SRMR=.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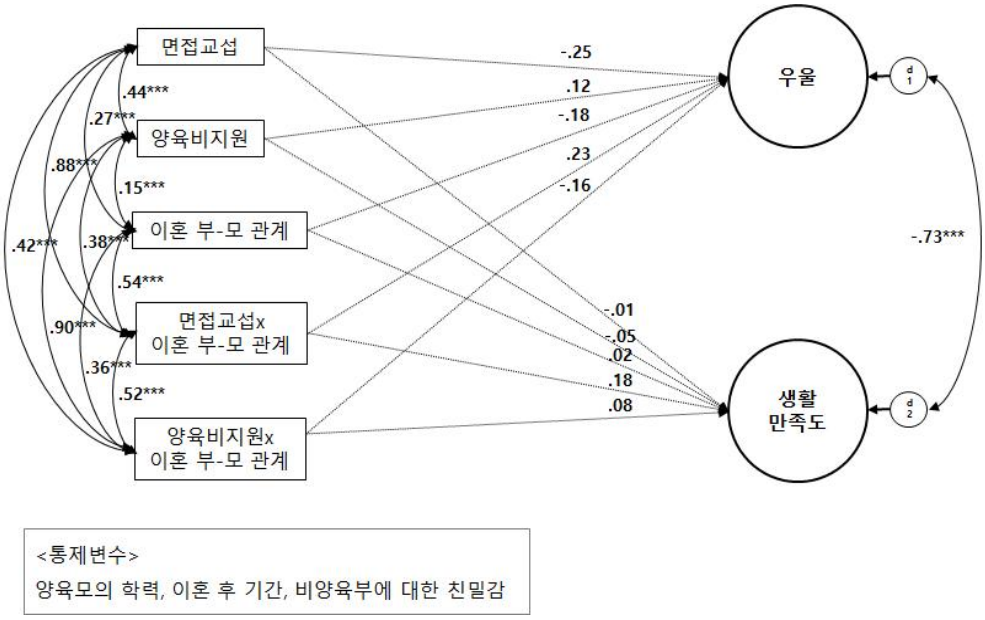

***$p<.001$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이혼 부-모 간 관계가 조절하는지 위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내 통제변수의 연결관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4-9]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양육모의 학력, 이혼후 기간과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이 모든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형에서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면접교섭x이혼 부-모 간 관계’, ‘양육비지원x이혼 부-모 간 관계’의 두 상호작용항이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과 상호작용변수들은 평균중심화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변수의 표준화된 계수는 계산식(홍세희, 정송, 2014)을 통해 정확히 계산하였다. 면접교섭과 자녀양육비 이행이 양육모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 이혼 부-모 간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Abstract

The Effect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on Adjustment of Divorced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Youngmi S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among divorced single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mplementation and combination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were associated with adolescent children's self-esteem, agg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single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Further, I also explored indirect effect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through single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urrent single-parent family policie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single-parent family members and to

confirm whether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which is the intended purpose of the policie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6, 2021, to June 30, 2021, for divorced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ged 11 to 19 years old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 Kyunggi, and Incheon). The surve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No. 2104/001-021). Promotions toward single-parent institutions,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social welfare center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online cafes for single parents were carried out, and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a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ly when both single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through Zoom, phone, or video calls. A total of 171 dyads of single-parent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perform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visitation with fathers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ggression, or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 children. On the other hand, when child support was paid, adolescent children's self-esteem was higher and aggression was lower than when child support was not paid. Second, neither visitation nor child suppor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ird,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not established, as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ingle mothers' adjustments. Fourth, in the group in which only child support was paid, the adolescent children's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comparison to the group in

which only visitation was made or the group in which neither visitation nor child support was implemented.

The above results reveal that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guarantees the welfare of children and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minor children. Therefore, child support should be continuously encouraged and supported by a child support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determine why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had beneficial effects on adolescents but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single mothers living together.

The effectiveness of visitation was found to be doubtful as the child's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only child support was paid in comparison to when the noncustodial father did not conduct both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or when only visitation was conducted. This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visitation in Korea does not meet the needs of children and single mothers. In the results of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hen visitation was conducted, the proportion of meeting less than once a month reached about 70%, and the time spent together that was less than six hours was about 60%. Considering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visitation, it seems unlikely that non-custodial fathers will perform the role of fathers an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hildren, even if the visitation is carried out.

In the future, academic and policy interests should be given to how often visitation should happen and what the non-custodial parents and their children do during visitation for it to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dyadic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divorced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Through this, the occurrence of bias or error in responses was reduced, and more reliable results were derived, providing more recent information on single-parent families, such as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aptation,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fulfillment. Second, the policy effect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on single-parent families were empirically verified. Third, this study evaluated the policy effects indirectly based on the real-life situation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target of the policy, rather than fulfillment rates or satisfa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services of visitation and child support. Finally, this study supports the importance of child support and identifies ways to improve visitation for children's best interests.

keywords : adolescents, child support, policy effect, single-parent families, single-parent family policy, visitation

Student Number : 2015-31158